

310.111
5647
12005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

지도지침서



B537706



• CONTENTS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

I. 지도요원의 임무 _ 6

II. 조사일정별 지도·감독사항 _ 12

1. 교 육 _ 12
2. 조사원 업무분장 _ 13
3. 조사원 관리(일반사항) _ 13
4. 준비조사 _ 13
5. 본 조 사 _ 14
6. 조사표류 제출 _ 15

III. 업종별 조사내용 지도사항 _ 18

1. 업종별 산업분류 구분 _ 18
2. 업종별 매출액(영업수익) 유형 _ 29
3. 업종별 조사항목과 결산서 연관관계 _ 33

IV. 조 사 사 례 _ 48

V. 조사표 내용검토요령 _ 90

◎ 부록 _ 104

1. 주요용어 해설 _ 104
2. 세금과 공과 _ 116

1. 총 관리자

■ 채용인원 : 총 286명

- ◎ 시·군·구별로 각 1명씩 채용하되 다음은 차등 적용하여 채용
 - 사업체 수 25,000개 이상 ~ 40,000개 미만 시·구(29개) : 2명 배정
 - 40,000개 이상 ~ 55,000개 미만 시·구(2개) : 3명 배정
 - 55,000개 이상 시·구(1개) : 4명 배정
- ※ 단, 비자치구가 있는 일반 시는 배정대상에서 제외

■ 채용기간 : 30일간

- ◎ 조사요원 교육준비 및 참석 : 2일(3. 20. ~ 3. 31. 기간 중)
- ◎ 조사원 업무량 배정 : 2일(4. 3. ~ 4. 4.)
- ◎ 준비조사 및 본조사 : 24일(4. 6. ~ 4. 29. <4. 8. ~ 4. 9. 제외>)
- ◎ 조사서류 집계 및 정리 : 2일(5. 1. ~ 5. 2.)

■ 채용방법

- ◎ 총 관리자로 지원한 대상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시·군·구의 장이 채용

■ 채용자격

- ◎ 시·군·구 통계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고
- ◎ 사업체통계조사에 참여한 유경험자 중 업무처리가 능통한 자로서
- ◎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을 능률적으로 통솔할 수 있으며
- ◎ 관내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 거주자

■ 수행업무

- ◎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의 채용·관리 보조
- ◎ 교육준비 및 조사관리자 업무배정
- ◎ 조사용품 배부 및 관리계획서 작성
- ◎ 현장조사(준비조사 및 본조사) 준비 및 조사 진행상황 관리
- ◎ e-관리시스템 및 입력시스템 관리·운영
 - 인터넷조사관리, 물품관리, 인력관리, 조사구관리 등
- ◎ 기타 총조사 관련 업무 총괄 등



2. 조사관리자

■ 인원 : 1,921명(조사원 10명당 1명)

■ 채용기간 : 총 28일간

- 교육 참석 : 2일('06. 3. 20.~3. 31.기간 중)
- 조사원 업무배정 : 1일('06. 4. 4.)
- 준비조사 및 본조사 : 24일('06. 4. 6.~4. 29.<4. 8. ~ 4.9. 제외>)
- 조사표 정리 및 집계 : 1일('06. 5. 1.)

■ 수행업무

① 조사원 업무분장

- 시·군·구 지도공무원 및 총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담당조사원(10명)별 업무를 분장
- 조사원 1인 1일당 8.5개 사업체 조사 기준으로 1인당 160개 ~ 180개(3 ~ 5개조사구)범위 내에서 조사업무량 배정

② 조사용품 관리 및 배부

- 시·군·구 지도공무원 및 총 관리자로부터 담당조사원에게 지급할 조사용품 수령 및 배부
- 조사표류는 한 번에 다 배부하지 말고 조사원별로 조사 진척률을 감안하여 배부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

③ 조사원 관리 및 현장지도

- 매일 담당조사원별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부진 지역 독려(별도 양식 : 「조사원 관리 현황」 참조)
 - 매일 1회 이상 조사원이 출근하도록 하고 출근부 확인 및 관리
- 중도 포기 조사원 파악 및 보고
 - 중도 포기를 했음에도 통보를 하지 않아 조사가 방치된 조사구가 있는지를 수시로 파악
 - 중도 포기 조사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대체하고 지도 및 관리 철저
 - 교체조사원에 대한 조사요령 보완교육
- 반드시 교육받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지 수시로 파악
 - 다른 사람이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도공무원에게 즉시 보고 후 조치

- 조사기간 중 조사원이 조사에 전념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 조사원이 개인적인 일로 조사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는지 수시 점검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지 않고 탁상조사를 하는지 수시로 점검
- 조사원의 질의 및 문제점 해결
 -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은 지도공무원과 협의하여 답변하고, 문제점은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총 관리자에게 보고 후 조치
- 불응업체에 대한 설득 및 협조 유도
 -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사업체를 매일 파악하여 조사원과 함께 현지 방문하여 설득 조사
 - 설득이 어려운 사업체는 먼저 빌딩, 상가 등의 관리사무소 협조를 구하고, 그래도 설득이 안 되는 사업체는 담당공무원 또는 총 관리자에게 협조 요청
- 취약지역 조사지도
 - 유흥가 등 취약 조사구에 대한 조사 지원
 - 야간 업소 등에 대한 야간조사 시 2~3인 함께 조를 편성, 동행 조사
 - 조사 사업체의 착오 및 누락이 발생치 않도록 수시로 현장 확인 지도

④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전달사항 시달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조사원별로 수시 접수하여 내용을 철저히 검토
- 검토 후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조사원에게 보완토록 지도
- 수시로 시달되는 업무연락, 조사내용 등을 조사원에게 전달
- ※ 「대상외」와 「순수폐업」인 사업체는 반드시 재확인하여 조사 대상사업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⑤ 완료된 조사표류 접수 및 관리

- 조사원증, 조사표(1~7표), 조사구요도(2부), 사업체명부(2부)는 조사완료 후 조사원으로 부터 회수
- ※ 필요시 조사지침서, 산업분류색인표(요약)를 제출 받음

⑥ 개인운수사업체(개인택시, 개별화물, 개인용달 등) 조사표 작성

- 조사관리자는 개인 운수사업체의 등록명부를 해당 조합에서 입수하여 개인운수사업자의 주소지(읍·면·동)별로 조사표를 작성(연간총매출액은 조합에서 파악한 평균매출액을 적용함)



3. 지도공무원

■ **운용기간** : 2005. 4. 6. ~ 4. 29. (준비조사 2일, 본조사 20일)

■ **담당공무원별 수행 업무**

- ◎ **통계청 순회지도 공무원**
 - 사업체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집중관리
 - 조사기간 중 담당지역 순회지도 및 진행상황 점검
 - 담당 지역의 문제점 해결 및 결과보고
 - 조사표류 작성상태 확인 및 지도
 - 기타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해결 등

-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공무원 임무**
 - 조사원, 조사관리자, 총 관리자 관리
 - 조사관리자에 대한 업무 수행실태를 수시 점검
 - 중도포기 조사원에 대해서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보완교육 실시 후 투입
 - 담당지역 순회지도 및 관내지역 조사추진상황 파악·보고
 - 총 관리자 및 조사관리자로 부터 보고받은 조사추진상황을 e-관리시스템에 등재 조치
 - 조사 부진 조사원에 대한 조사 독려 및 담당 조사관리자 지원 지시
 - 사업체에 대한 조사협조 홍보 추진
 - 관내 지역 문제점 해결 및 결과 보고
 - 관내 취약지역 집중 지도 및 지원
 - 탁상 및 대리조사 방지
 - 조사표류 작성상태 확인 및 보완 지도

은도

조사



조사일정별 지도 · 감독사항

1. 교육
2. 조사원 업무분장
3. 조사원 관리(일반사항)
4. 준비조사
5. 본조사
6. 조사표류 제출

1. 교육

■ 교육 실시 전

총관리자 및 조사관리자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육 장소를 사전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소 및 일정 등 협의 ○ 교육 기자재 준비물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판 등 교육장 안내문 부착 - 칠판, 마이크, 빔 프로젝터 및 pc 설치 등 ○ 교관 확인 ○ 교육 참석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공무원,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업무보조요원 등 ○ 교육용품을 조사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표(1~7표), 조사지침서 등 ○ 교육 참석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공무원, 총 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업무보조원에게 교육일시 및 장소 통보

■ 교육 실시

총관리자 및 조사관리자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용품 수령 ○ 교육 참석 및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준비물 점검 및 확인 ○ 교육 참석 ○ 불참자, 대리참석자 등을 파악한 후 본인이 참석토록 조치 ○ 예비조사원 참석 여부 확인 ○ 교육용품 배부 ○ 교육 참석자명부 비치 ○ 사전 사이버교육 미 이수자 명단 통보



2. 조사원 업무분장

총관리자 및 조사관리자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담당할 조사원을 할당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조사원의 조사지역 및 전화번호 등을 파악 ○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별 업무량 배정의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 과다 및 과소 등에 대해 이유와 타당성 검토 ○ 지역실정에 맞게 조사원별 담당 조사구를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급적 거주지역 중심으로 배정

3. 조사원 관리(일반사항)

총관리자 및 조사관리자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및 지시사항 전달 ○ 조사원의 현지 업무 수행상태 점검 ○ 일일조사 진척상황 파악 ○ 부진 조사원 및 중도 포기 예상자 집중 관리 ○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 보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예방 수시 점검 ○ 조사요원 출근상황 확인 ○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즉시 대체 ○ 일부 조사가 어려운 사업체에 조사관리자와 조를 편성 하여 동행조사 ○ 조사원 애로사항 해결 ○ 조사요원 수당 지급 준비

4. 준비조사(4. 6. ~ 4. 7.)

총관리자 및 조사관리자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구 경계 안내 및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 누락, 변동사항 확인 및 보고 ○ 조사구요도 및 사업체명부 변동내용 파악 및 보고 ○ 조사원별 조사대상 사업체 파악 상태 확인 및 보고 ○ 조사구 요도 및 사업체명부 조사여부 및 정리 상태 확인 (4. 8. ~ 4. 9.) ○ 인터넷 조사대상업체 관리 ○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지시사항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항 업무지시 : 소집장소 확보 등 ○ 조사용품 부족여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시 통계청 상황실로 보고 ○ 상황실 설치 상태 확인 ○ 지역홍보 실시 ○ 지도공무원의 담당지역 배정 ○ 조사표류 과부족 파악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분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 강구 ○ 본조사 준비상황 점검 ○ 조사구 중복 및 누락시 경계조정

5. 본조사(4. 6. ~ 4. 29.)

■ 1 ~ 4일차(4. 10. ~ 4. 13.)

총관리자 및 조사관리자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 현지조사 실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조사상 애로 및 문제점 - 조사표 내용의 정확성 - 조사표 작성상태 등 ○ 업무능력이 미흡한 조사원 동행지원 ○ 불응사업체 설득 및 동행조사 ○ 조사 진도 파악 및 보고 ○ 인터넷 조사대상 업체 확인 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순회지도 및 상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진행 상황 - 조사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운영상태 등 ○ 조사원 현지조사 실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상·대리조사 여부 - 현지 조사상 애로 및 문제점 파악·보고 - 조사 내용의 정확성 - 조사표 작성상태 등 ○ 조사 진도가 부진한 조사원 독려

■ 5일차(4. 14.)

총관리자 및 조사관리자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별 조사표 작성상태 중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상·대리조사 여부 - 조사원별 문제점 파악 및 보충교육 ○ 불응사업체 설득 및 동행조사 ○ 인터넷조사대상 업체 확인 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순회지도 및 상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진행 상황 - 조사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조사원, 조사관리자, 총관리자 운영상태 등 ○ 조사원별 조사표 작성상태 종합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별 문제점 파악 및 보충교육

■ 6 ~ 16일차(4. 15. ~ 4. 25.)

총관리자 및 조사관리자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 현지조사 실태 파악(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상·대리조사 여부 - 현지 조사시 애로 및 문제점 - 조사표 내용의 정확성 - 조사표 작성상태 및 내용검토 등 ○ 조사부진 조사원 원인 파악 ○ 불응사업체 설득 및 동행조사 ○ 매일매일 조사 진도 파악 및 보고 ○ 인터넷조사대상 업체 확인 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20.까지 미작성한 신청업체는 재방문하여 조사표 작성토록 조사원 독려 ○ 미조사된 본사조사 확인 및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순회지도 및 상황보고(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진행 상황 - 조사원의 현지 조사내용 정확성 -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운영상태 등 ○ 수범사례 수집 ○ 조사 진도 파악 및 보고



■ 17 ~ 20일차(4. 26. ~ 4. 29.)

총관리자 및 조사관리자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진도 파악 및 보고 ○ 조사부진 조사원 독려 및 지원 ○ 인터넷조사대상 업체 확인 및 정리 ○ 미조사된 본사조사 확인 및 미조사 본사명부와 현황표 작성·보고 ○ 조사표 정리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표 매수 확인 - 조사표 편철 방법 교육 - 조사표류 접수 ○ 조사원이 제출한 조사표류의 종합 내용 검토 및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진도 파악 및 보고 ○ 조사 마무리 상황 점검 및 부진지역 집중 지도 ○ 조사원 수당 지급 준비 ○ 조사 부진 조사원 대책 강구 ○ 부실조사표에 대한 재조사 여부를 조사관리자에게 사전에 확인 ○ 미조사된 본사조사대상 업체명부와 현황표를 즉시 관할 지방통계청/사무소에 통보

6. 조사표류 제출

구 분	조사원 ⇒ 조사관리자	조사관리자 ⇒ 총 관리자	총 관리자 ⇒ 담당공무원	시·군·구 ⇒ 지방통계청 /사무소	비 고
조 사 원 증	○	○	○	×	시·군·구가 자체 폐기
조사표(1~ 6표 및 7표)	○	○	○	○	
조사구 요도	2부	2부	2부	1부	시·군·구 1부 보관
사업체 명부	2부	2부	2부	1부	"
조사지침서	○	○	○	○	필요수량 만큼
산업분류색인표(요약)	○	○	○	×	"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종합색인표	-	○	○	○	"
지도지침서	-	○	○	○	"



업종별 조사내용 지도사항

1. 업종별 산업분류 구분
2. 업종별 매출액(영업수익) 유형
3. 업종별 조사항목과 결산서 연관관계

1. 업종별 산업분류 구분

농업, 수렵업 및 임업(A)

【조경업과 조경건설업】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 업 내 용
조경수 식재 및 관리 서비스업	01410	건설업면허 없이 조경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조경공사업	45126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조경사업을 하는 사업체

제 조 업 (D)

■ 도·소매업과의 구분

【도축업과 정육점】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 업 내 용
도 축 업	15111	가축류(소, 돼지, 양 등)나 가금류(닭, 칠면조 등)를 도축하여 고기 및 원피를 생산하는 산업
기타 육지동물고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19	도축된 고기를 건조·훈연·염장·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일관 공정에 의하여 특정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예 통조림 제조, 햄·소시지 제조 등
육류도매업	51312	도축된 고기(가축류, 가금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산업
육류소매업	52212	도축된 고기(가축류, 가금류)를 구입하여 소매하는 산업 (정육점)

【얼음제조·소매 및 냉동창고】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 업 내 용
얼음 제조	15541	얼음공장에서 얼음을 제조
얼음 소매	52221	소비자를 대상으로 얼음을 소매(음료소매업)
냉동 창고	63202	냉동물품 및 얼음 등을 보관하는 산업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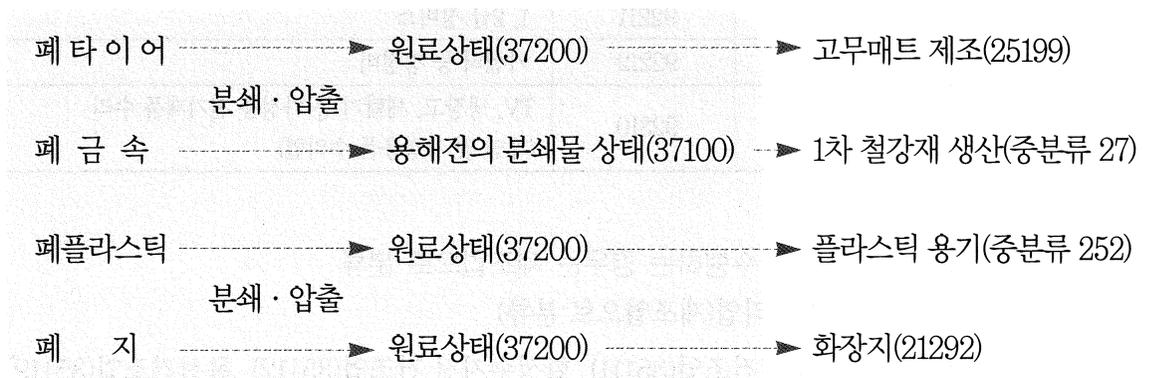
【 알루미늄 샤시, 창틀 제조 및 판매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업 내용
플라스틱제 창틀 제조	25229	강화플라스틱제를 이용하여 문 및 창틀을 제조
알루미늄 새시바 제조	27222	알루미늄 괴를 압연 및 압출기로 가공하여 바, 봉 등을 제조
알루미늄 창틀 제조	28111	알루미늄 새시바를 원재료로 문 또는 창틀을 제조
알루미늄 새시바 소매	52619	알루미늄 새시바를 구입하여 단순절단 또는 원형 그대로 소매(기타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소매업)

【 재생재료 가공처리업과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업 내용
재생용 금속가공 원료 생산업	37100	폐금속(고철, 알루미늄 등)을 펠릿(알갱이 상태)형태로 완전 분쇄 처리하는 산업활동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200	폐플라스틱 등을 펠릿 형태로 완전분쇄 처리하는 산업활동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	51731	고물상과 같이 재생재료 수집·판매하는 활동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절단·압착 등의 과정이 결합될 수 있음)

◎ 그러나 재생재료(원료상태)를 이용하여 제품이 출하된 경우는 해당 제조업으로 분류



『중분류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자동차부품 제조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 업 내 용
타이어 및 튜브 제조	25111	각종 차량의 타이어 및 튜브 등 제조 ☞ 중고타이어 재생은 제외
백미러,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업	26122	유리 가공품 제조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	31912	전기배선장치 제조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4301	기화기, 카브레타, 피스톤, 냉각장치 등 제조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4302	문짝(도어), 보닛(덮개), 범퍼 등 제조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34309	기어박스, 클러치, 핸들, 소음기, 안전벨트 등
운수장비용 의자 제조업	36111	자동차용 의자

- 금속, 고무, 플라스틱 재료를 주조, 단조, 성형하여 만든 1차 제품
 - ☞ 금속(273 또는 289), 고무(251), 플라스틱(252) 업종으로 각각 분류

【 내연기관 제조업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 업 내 용
자동차용	34110	자동차 엔진(내연기관) 제조업
선박용	29111	선박용 내연기관 제조업
항공기용	35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수리업과의 관계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 업 내 용
기타 일반기계 수리업	92119	선박부품,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수리
농기구 수리업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구 수리 센타
자동차 종합수리업	92211	1, 2급 정비소
자동차 전문수리업	92212	카센터 등 경정비
가전제품 수리업	92310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정용 전기제품 수리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제조 사업체에서 결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
 -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수리업(제조업으로 분류)
 - 선박 수리업(3511) : 강선건조업(35111), 합성수지선 건조업(35112), 목선건조업(35119)
 - 철도차량 수리업(3520) :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35201)
 - 항공기 수리업(353) : 항공기 제조업(35310)



【 건강식품(개소주 등)의 제조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업 내용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5497	직접 재료를 구입하여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또는 원재료를 제공 받아 증탕하여 건강식품을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예 건강원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52216	흑염소 엑기스, 알로에 가공품 등을 구입하여 소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E)

- 전기업(401), 전기재료소매업(52531)과 전기공사업(4631)의 구분
 - 전기업에는 발전소, 배전소, 변전소, 송전소, 전기사업관리소(본사, 지사, 영업소)만 포함
- 도시가스공급업(40200)과 도시가스 파이프라인 시공업(45129)의 구분
- 증기 및 온수공급업(40300)과 온천욕탕업(93121)의 구분
- 수도사업(410)과 건물 내부 수도공사업(45201)이나 하수처리장(90110)의 구분
 - 수도사업에는 공업용수공급, 공업용수관리사무소, 생활용수공급, 생활용수관리사무소, 수도배관공급, 정수장, 취수장, 해수의 정수처리장 등

도·소매업(G)

【 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의 구분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업 내용
도매업	512 ~ 519	구입한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등에게 재판매
상품중개업	511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명의(위탁자)로 중개)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 ☞ 매출액은 거래 상품총액이 아닌 수수료 수입만 해당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02	농(수)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 받지 않고 단지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중개만 하는 경우
과실 및 채소 도매업	51311	농산물(과실, 채소 등)을 직접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
수산물 도매업	51313	수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
과실 및 채소 소매업	52214	농산물(과실, 채소 등)을 구입하여 일반점포에서 직접 소매하는 경우
수산물 소매업	52213	수산물을 구입하여 일반 점포에서 직접 소매하는 경우



【 주유소와 액체연료 소매업의 구분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 업 내 용
주 유 소	50401	차량용 또는 보트용 액체연료(휘발유, 경유 등)를 소매
차량용 가스충전업	50402	차량용 또는 보트용 가스연료를 충전
액체연료 소매	52672	가정용 난방(난로 등) 및 취사용 유류(석유, 경유)를 소매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52673	용기에 충전된(또는 직접 충전) 가정용 가스연료를 소매

【 한의원, 한약재상의 구분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 업 내 용
한약 조제	24222	한의학 조제품을 제조
한약재 도매	51209	각종 한약재를 도매 판매
한약재 소매	52219	각종 한약재를 소매 판매
한 의 원	85124	한의학적 처방(치료 예방) 및 한약 조제하는 의료기관

【 우유대리점의 구분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 업 내 용
우유 도매	51324	사업체 또는 소매상 등에 대량으로 우유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체
우유계약배달 판매업	52892	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라 우유를 배달판매하는 사업체

【 떡집과 떡방앗간의 구분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 업 내 용
떡방앗간	15312	일반적으로 개인의 주문에 따라 떡가루 또는 떡을 만들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떡 집	15412	접객시설 없이 떡을 제조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
	51323	접객시설 없이 떡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
	52215	접객시설 없이 떡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경우
	55241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떡을 판매하는 경우



【 신문, 시험지, 학습지 등 보급소의 구분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업 내용
외 판	52893	외판원에 의한 소매
직접 계약배달 판매	52892	매장 없이 계약 배달판매업
매장에서 일반대중에게 판매	52	상품의 종류에 따라 「52」 소매업에 분류
학습지 배달 및 교육	80933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 종합소매업의 구분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업 내용
대형 종합소매	5211	대형매장(3,000m ² , 약 910평 이상)을 갖추고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백 화 점	52111	단일 경영주체가 다수의 매장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매장마다 전용 판매원이 직접 판매) 단, 백화점내의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수수료 매장, 임대 매장)되면 각각 별도의 사업체로 조사하며, 산업분류는 전문소매업의 해당 항목으로 분류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52119	단일 경영체제하에 대형매장을 갖추고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대형 할인점)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5212	3,000m ² (약 910평) 미만의 매장을 갖추고 음식료품 위주로 생활잡화 등을 종합적으로 소매
슈 퍼 마 켓	52121	165m ² ~ 3,000m ² (50평 ~ 910평)매장을 갖추고 음식료품 위주로 생활잡화 등을 종합적으로 소매
체인화 편의점	52122	종합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24시간 소매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52129	165m ² (50평) 미만의 매장을 갖추고 음식료품 위주로 생활잡화 등을 종합적으로 소매
그외 기타 종합소매업	52190	3,000m ² (910평) 미만의 매장을 갖추고 식료품 이외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 예 결혼용품 전문점, 노인용품 전문점

숙박·음식점업 (H)

【 제과점의接客시설 유·무에 따른 구분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업 내용
빵·과자 제조 판매(接客시설 없음)	15411	빵·과자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빵·과자 제조 판매(接客시설 있음)	55241	제과점에서接客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구입한 빵·과자 소매(接客시설 없음)	52215	接客시설 없이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

【 호텔업과 여관업의 구분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업 내용
호텔업	55111	룸서비스, 데스크서비스, 개별봉사서비스, 벨보이서비스, 연회, 집회설비 등 전 서비스의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법에 등록된 일반호텔, 관광진흥법에 등록된 관광호텔 등을 말함
여관업	55112	호텔업 이외의 각종 모텔, 여관, 여인숙 등을 말함 ☞ 일반호텔 : 호텔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호텔업에서 제공되는 종합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여관업(모텔 등)
휴양콘도 운영업	55113	회원제 숙박시설, 회원용 콘도미니엄, 회사전용 휴양시설 ☞ 약정에 의하여 이용권을 획득한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제공, 여유시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기도 함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55114	청소년 수련원, 자연학습원(숙박시설 갖추) ☞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은 청소년수련원(88999)
기타 관광 및 여행자 숙박시설 운영업	55119	산장 운영, 휴일 캠프장, 민박시설, 유스호스텔, 펜션
회사 및 단체 기숙사 운영업	55191	학교기숙사 운영, 회사 기숙사 ☞ 일반대중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특정회사 및 단체 소속원을 대상으로 숙식 제공

운수업(1)

- 부정기항공운수업(62200)과 항공화물주선업(63991)의 구분
- 파이프라인운송업(60400)과 하수처리업(90110)의 구분



금융 및 보험업(K)

【 새마을금고(65911)와 국내은행(65121)의 구분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 업 내 용
국 내 은 행	65121	국내시중은행(국민은행 등), 지방은행(경남은행 등), 특수은행(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등
신 용 조 합	65911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마을금고, 농협단위조합 등
개발금융기관	65921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 보험 영업소(6601 ~ 6604)와 대리점(67201)의 구분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 업 내 용
생명보험업 ~ 재보험업	6601 ~ 6605	보험회사 직영의 영업소는 보험종류에 따라 분류
보험회사 계약대리 및 중개업	67201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보험대리서비스 및 알선 서비스 등 활동

【 금융리스업과 운용리스업의 구분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 업 내 용
금융리스업	65923	소유권을 시설장비 사용자에게 주는 경우
운용리스업	71	소유권을 리스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로 『기계장비 임대업(71)』중 해당 산업으로 분류

부동산 및 임대업(L)

【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의 구분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 업 내 용
건설장비 운영업	46500	조작 운전자가 딸린 건설장비 임대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	71210	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

사업서비스업(M)

【 데이터베이스업과 생활정보신문, 시험정보은행 및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구분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업내용
정기광고간행물 발행업	22123	벼룩시장, 알뜰시장,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 발행업체 (인쇄시설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음)
시험정보은행	52621	각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
인터넷 접속서비스	64292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 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예 하나로, 두루넷 등
인터넷 검색서비스	72400	운세정보, 기상정보 등을 DB로 구축하여 서비스 예 다음, 야후, 엠파스, 네이버 등

【 실내장식공사와 실내장식(디자인)의 구분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업내용
실내장식공사	46412	실내에 벽지 도배, 모노룸, 실내장식, 카펫트 등 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업면허(건설전문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건설업으로 분류
실내장식(디자인)	74601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패션디자인업, 그래픽디자인업을 하는 경우

【 비디오테이프 대여와 비디오테이프 판매의 구분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업내용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52513	레코드판, 비디오테이프(DVD 등 포함) 등을 소비자에게 소매 하는 경우
비디오테이프 대여	71301	비디오테이프(DVD 등 포함)를 대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비디오 상영	87142	비디오테이프(DVD 등 포함)를 상영하는 경우 예 비디오방(영화감상실)
녹음시설운영업	8731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음반·테이프 등에 녹음하는 경우(음반원판 제작관련 등)



【 만화 가게의 도매 및 대여에 따른 구분 】

- 만화 가게
 - └ 도매점(51463) : 만화를 도매하는 경우
 - └ 대여(71302) : 만화를 대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만화방 포함)

【 광고대행, 광고기획, 광고물 제작, 판촉물 제작, 간판 제조의 구분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업 내용
전기식(빛에 의한) 간판 제조	31522	고정 광원을 갖는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 ☞ 네온사인, 조명 광고판 등 ※ 형광등 내장형 제외(36950)
비전기식 간판 제조	36950	고정광원을 갖지 않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 ☞ 간판, 현수막, 광고물 등
광고대행업	74510	광고주(사업체) 또는 광고매체(언론매체)를 대리하여 종합, 특정 광고방식에 의한 광고를 총괄책임
광고물작성업	74593	광고물을 직접 제작 또는 판매하지 않고 문안 작성, 광고물 도안, 설계 등의 광고물 기획 작성하는 산업활동

【 청소 대행업소의 구분 방법 】

- 건물 및 구내, 가구, 기기의 소독대행(75921)
- 건축물 청소 대행업(75922)
- 산업설비(선박·산업용장비 등) 청소대행(75923)
- 쓰레기, 폐기물 등 수거
 - 하수처리업(90110)
 - 분뇨처리업(90121)
 - 축산폐기물 처리업(90122)
 - 폐기물 수집운반업(9021)
 - 폐기물 처리업(9022) ⇒ 산업 오폐수처리 포함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놀이방 및 유치원 등의 구분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업 내용
유치원	80110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교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교육 기관
어린이집	80110	5세 이상의 어린이가 많은 경우 유아교육기관으로 분류
	86210	5세 미만의 어린이가 많은 경우 보육시설로 분류
놀이방	86210	비수용아동시설로서 5세미만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설이며, 보육시설로 분류
일반교습학원, 그외 기타 교육기관	8093, 8099	일반 학원(미술, 음악, 영어, 태권도 등)에서 미취학아동에게 유치원, 어린이집과 유사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일반학원으로 분류

【 병원 및 유사의료업(85192)의 구분 】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사업 내용
종합병원	85111	100인 이상의 입원시설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일반병원	85112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일반의원	85121	치과 및 한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의원을 제외하고 외래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기관
치과기공소	33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
산후조리원	93993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Q)**【 오락, 게임방 운영업의 구분 】**

- 경륜장 및 경마장 : 88313
- 전자오락실 운영업 : 88911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88912 (인터넷 게임방, PC 게임방)
 - ☞ 전화방, 대화방, 휴게방, 화상방 등 : 93999(그외 기타 분류 안 된 모든 서비스업)
- 노래방 운영업 : 88913 (가요주점 제외)
- 경마 마권발행소 (TV 경마) : 88995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 자동차 종합수리와 경정비 수리(카센터 등)의 구분
 - 자동차 종합수리(92211) : 자동차를 종합수리하는 1급정비 공장
 - 자동차 전문수리(92212) : 배터리, 오일교환 등 간단한 경정비를 주로하는 카센터
- 폐기물수집처리업(902)과 청소대행업(7592)의 구분
- 노동조합(91200)과 전문가단체(91120)의 구분
- 전문가단체(91120)와 일반친목단체(91990)의 구분

2. 업종별 매출액(영업수익) 유형

■ 농업·임업, 수렵업 및 어업

- 판매액 또는 출하액을 기입
- 조경, 작물생산, 축산, 수렵, 어업 등의 관련 서비스업은 해당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수입액을 기입

■ 광 공 업

- 매출액은 출하액이 되며, 임가공사업체에서 임가공수수료 수입액도 이에 해당
- 출하란 제조 또는 가공한 제품이 공장 밖으로 출고되는 것을 말함. 따라서 공장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은 출하에서 제외됨
 - 출하액은 출하된「품목별 출하량」×「단가」로 환산하여 이를 합계한 것임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전기업은 전기판매 수입액을 기입
- 가스업은 가스판매 수입액을 기입
- 수도업은 급수수입액(수도사용료)을 기입

■ 건 설 업

- 공사기성액을 기입
- 공사기성액이란 2005. 1. 1. ~ 12.31. 사이에 시공에서 완공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그 전체 금액을 기입하며 공사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된 경우는 동기간 중 진척된 부분의 금액만을 환산하여 기입

■ 도매 및 소매업

◎ 매출액 유형

- ㉠ 상품이 판매된 경우 상품판매액
- ㉡ 할부판매 또는 상품권 발행에 의한 판매의 경우는 상품이 구입자에게 인도되었을 때 판매액에 계상
- ㉢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였을 때(또는 매출계산서 도착시) 위탁판매자의 매출액으로 계상
- ㉣ 백화점의 매출액은 직영매장 및 특정매입매장 상품판매액과 임대매장(갑) 및 임대(을)매장의 월세 및 임대수수료를 기입
 - 백화점의 임대(갑) 및 임대(을)매장의 매출액은 별도 사업체로 조사
- ㉤ 상품중개업은 중개수수료 수입액을 계상

※ 백화점(52111)

유통발전진흥법에 따라 대규모 소매점으로 허가된 사업체중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고, 직영률(직영매장+특정 매입매장의 비율)이 30%이상인 사업체

(단, 95년 7월 이후 개설한 백화점은 매장면적이 4,000㎡ 이상이고 직영률이 30%이상인 사업체)

$$\text{직영률} = (\text{직영매장} + \text{특정매입매장}) / \text{전체매장} \times 100$$

《 백화점 운영형태별 매장의 종류 》

- ◎ 직 영 매 장 : 백화점 경영주가 상품의 구매, 판매, 관리 등을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운영하는 매장
- ◎ 특정매입매장 :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상품의 구입, 재고, 판매 등을 백화점 경영주가 직접 관리하되 재고상품은 계약을 맺은 특정업체에 반품함(상품재고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업체에서 점원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음)
- ◎ 임대(갑)매장 : 일정액의 보증금 및 월세(정액)를 받고 임대한 매장
- ◎ 임대(을)매장 :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를 받고 임대한 매장

■ 숙박 및 음식점업

- ◎ 여관, 호텔업은 숙박료, 음식료, 매점매상, 회의장 대실료, 결혼식장비 등을 계상
- ◎ 식당업, 주점업, 다과점업 등은 음식물판매 수입액을 계상



※ 호텔(5511)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숙박업과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는 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업체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숙박업은 관광호텔, 해상관광호텔, 국민호텔, 가족호텔, 한국 전통호텔 등이 있으며, 휴양콘도미니엄은 회원제숙박업임
-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조건을 갖춘 일반호텔을 말함

■ 운수, 창고업

- 육상, 수상, 항공 등의 운송업은 사람 및 화물의 운송수입액을 기입
-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은 여행알선료 수입액 또는 서비스제공 수수료수입액을 기입

■ 금융 및 보험업

- 금융업은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기타영업수익을 영업수익으로 기입
- 보험업의 경우
 - 생명보험 : 보험영업수익(보험료수익, 재보험료수익),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기타투자영업수익을 기입
 - 손해보험 : 보험영업수익(경과보험료),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기타투자영업수익을 기입
 - 보험대리점 : 수수료 수익

■ 부동산업, 임대업

- 부동산임대업은 임대료,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감정업은 수수료 등 영업수입액을 기입
- 기계장비임대업(71)의 리스업은 운용리스에 의한 임대료수입과 금융리스에 의한 수입이자 등의 영업수입(겸업수입)을 합산하여 기입
 - 단, 금융리스가 큰 사업체는 금융리스업(65923)에 포함
- *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대표적인 사업체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있고, 부동산감정업(7022)의 대표적인 사업체로 한국감정원이 있음
- 사업서비스업은 해당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수입액을 기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병원, 의원 등의 의료업은 의료비수입액을 기입
 - ※ 보건소 등 비영리의료시설인 경우 의료비 수입액 대신 경상경비지출액을 기입
- 수용 또는 비수용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세출결산액 중 경상경비지출액을 기입
 - 단, 놀이방, 어린이집 등은 영업수익을 기입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 해당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수입을 기입
- ◎ 비영리기관인 사회단체는 경상경비지출액을 기입





3. 업종별 조사항목과 결산서 연관관계

■ 도매 및 소매 업종(조사표 2)

과 목	금 액	도·소매업종	비 고
I. 매출액	××	14-1항/14-2항 ① 매출액 매출액 = 상품매출액 - 매출에누리 - 매출환입 - 매출할인	
1. 상품매출액	××		
2. 매출에누리	(××)		
3. 매출환입	(××)		
4. 매출할인	(××)		
II. 매출원가	××	14-2 항 ② ㉗ 매출원가	
1. 연초상품재고액	××	매출원가 = 연초상품재고액 + 연중상품매입액 - 연말상품재고액	
2. 연중상품매입액	××	※ 원가명세서를 참고하여 인건비, 구입부대비용 등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해당비목으로 조사	
3. 연말상품재고액	(××)		
III. 매출총이익	××	I - II = III(매출총이익)	
IV. 판매비와 관리비	××	14 항 ② 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 급 여	××		
2. 제 수 당	××	14-1 항 ② ㉘ 판매비와 관리비	
3. 퇴 직 급 여	××	㉗ 인건비 :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모든 인건비성 비용	
4.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5. 복 리 후 생 비	××		
6. 임 차 료	××	14-1 항 ② ㉘ / 14-2항 ② ㉘ 임차료	
7. 세 금 과 공 과	××	14-1 항 ② ㉘ / 14-2항 ② ㉘ 세금과공과	
8. 감 가 상 각 비	××	14-2 항 ② ㉘ 감가상각비	
9. 대 손 상 각 비	××	14-2 항 ② ㉘ 대손상각비	
10. 수 도 광 열 비	××		
11. 보 험 료	××		
12. 광 고 선 전 비	××	14-2 항 ② ㉘ 기타경비에 합산	
13. 수 수 료	××	(14-1 항 ② ㉘ 기타경비에는 이의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포함)	
14. 접 대 비	××		
15. 운 반 · 하 역 비	××		
16.	××		
V. 영업이익	××	14-1 항 ③ / 14-2항 ③ 영업이익	
		이 하 생 략	

■ 숙박 및 음식 업종(조사표 3)

과 목	금 액	음식·숙박업종	비 고
I. 매출액	××	14-1 항 / 14-2항 ① 매출액	
1. 객실료수입	××	14-2 항 ①㉗ 객실료수입액	
2. 식료수입	××	14-2 항 ①㉎ 음식료수입액	
3. 음료수입	××	14-2 항 ①㉎ 음식료수입액	
4. 봉사료수입	××	14-2 항 ①㉔ 기타영업수입액	
5. 상품매출액	××	14-2 항 ①㉔ 기타영업수입액	
6. 기타수입	××	14-2 항 ①㉔ 기타영업수입액	
II. 재료비	××	14-1 항 ②㉗ 재료구입비/14-2항의 ②㉗ 매출원가	
1. 식 료	××	※ 원가명세서를 참고하여 인건비, 임차료 등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해당비목으로 조사	
2. 음 료	××		
3. 상품매출원가	××		
4. 기 타	××		
III. 인 건 비	××	14-1 항 ②㉔㉕ 인건비	
1. 급여 및 수당	××	14-2 항 ②㉔㉕ 급여총액	
2. 상 여 금	××	14-2 항 "	
3. 퇴 직 급여	××	14-2 항 ②㉔㉖ 퇴직급여	
4. 단체퇴직급여	××	14-2 항 "	
5. 복리후생비	××	14-2 항 ②㉔㉗ 복리후생비	
6. 잡 급	××	14-2 항 ②㉔㉕ 급여총액	
IV. 경 비	××		
1. 식당용기비	××	14-2 항 ②㉔㉙ 기타경비	
2. 린넨 및 제복비	××		
3. 메 뉴 비	××		
4. 객용소모품비	××		
5. 주방소모품비	××		
6. 일반소모품비	××		
7. 세 탁 비	××		
8. 장화장식비	××		
9. 통 신 비	××		
10. 차량유지비	××		
11. 도서신문비	××		
12. 세금과공과	××	14-1 항 ②㉔㉚ / 14-2 항의 ②㉔㉚ 세금과 공과	
13. 임 차 료	××	14-1 항 ②㉔㉛ / 14-2항의 ②㉔㉛ 임차료	
14. 감가상각비	××	14-2 항 ②㉔㉜ 감가상각비	
15. 대손상각비	××	14-2 항 ②㉔㉝ 대손상각비	
16. 조사연구비	××	14-2 항 ②㉔㉞ 기타경비/(14-1 항 ②㉔㉞ 기타경비에는 이 외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포함)	
17.	××		
V. 영업이익	××	14 항 ③ / 14-2 항 ③ 영업이익	
		이하생략	



■ 서비스업종(조사표 5, 6)

과 목	금 액	서비스업종 항목	비 고
I. 매출액	××	14-1항/14-2항 ① 매출액(영업수익, 운영수익)	
1. 상품매출액	××		
2. 용역매출액	××		
II. 매출원가	××		
1. 상품매출원가	××	14 항 매출원가(재료구입비)	
(1) 기초상품재고액	××		
(2) 당기상품매입액	××		※ 원가명세서를 참고하여 인건비, 임차료 등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해당 비목으로 조사
(3) 기말상품재고액	××		
2. 용역매출원가	××	14-1 항 인건비에 포함조사	
III. 매출총이익	××		
IV. 판매비와 관리비	××	14-2 항 ② ④ 판매비와 관리비	
1. 급 여	××		
2. 제 수 당	××		
3. 퇴 직 급 여	××		14-1 항 인건비 : 급여, 제수당, 퇴직 급여, 복리 후생비 등 모든 인건비성 비용 포함
4.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5. 복 리 후 생 비	××		
6. 임 차 료	××	14 항 임차료	
7. 세 금 과 공 과	××	14 항 세금과 공과	
8. 감가상각비	××	14-2 항 ② ④ ⑥ 감가상각비	
9. 대손상각비	××	11-2 항 ② ④ ⑤ 대손상각비	
10. 수 도 광 열 비	××		
11. 보 험 료	××		
12. 광 고 선 전 비	××		14-2 항 ② ④ ⑥ 기타경비
13. 수 수 료	××		(14-1 항 ② ④ ⑥ 기타경비에는 이외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포함)
14. 접 대 비	××		
15. 운 반 · 하 역 비	××		
16. ……………	××		
V. 영 업 이 익	××	14-1 항 ③ /14-2 항 ③ 영업이익	
		이 하 생 략	

■ 금융관련 업종(조사표 4)

구 분	은 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 권
가. 영업수익	1) 영업수익 가) 이자수익 나) 수수료수익 다) 보증료수익 라) 배당금수익 마) 상품유가증권 처분이익 바) 상품유가증권 평가이익 사) 신탁업무운용수익 아) 외환거래이익 차) 기타금융수익 등 (신탁보수 등)	1) 보험영업수익 가) 수입보험료 나) 재보험료수익 2) 투자영업수익 가) 이자수익 나) 배당금수익 다) 임대료수익 라) 수수료수익 마) 유가증권처분이익 바) 유가증권평가이익 사) 기타투자이익 등	1) 경과보험료 2) 투자영업수익 가) 예금이자 나) 단자어음이자 다) 대출채권이자 라) 유가증권이자 마) 기타이자수익 바) 배당금수익 사) 유가증권처분이익 아) 기타투자이익 등	1) 영업수익 가) 수수료 수익 나) 이자수익 다) 유가증권처분이익 라) 유가증권평가이익 마) 분배금수익 바) 배당금수익 사) 파생상품거래이익 아) 기타영업수익
나. 영업비용	1) 영업비용 가) 이자비용 나) 수수료비용 다) 유가증권처분손실 라) 유가증권평가손실 마) 대출채권매각손실 바) 외환매매손실 사) 신용보증기금출 연금 아) 기타금융수익 차) 판매비와관리비	1) 보험영업비용 가) 지급보험금 나) 재보험비용 다) 사업비 라) 신계약상각비 마) 할인료 2) 투자영업비용 가) 이자비용 나) 재산관리비 다) 지분법평가손실 라) 대손상각비 마) 유가증권처분손실 바) 유가증권평가손실 사) 기타투자비용 등 3) 책임준비금전입액	1) 보험영업비용 *경과보험료 - 발생손해액 - 장기저축성보험환급액 - 순사업비 -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 증가액 - 비상위험준비금증가액 - 계약자배당금준비금 증가액 2) 투자영업비용 가) 이자비용 나) 재산관리비 다) 유가증권평가손실 라) 부동산관리비 마) 유가증권처분손실 바) 부동산감가상각비 사) 부동산평가손실 등	1) 영업비용 가) 수수료 비용 나) 이자비용 다) 유가증권처분손실 라) 유가증권평가손실 마) 파생상품거래손실 바) 판매비와관리비



■ 은행업 이외의 일반 금융업

● 종합금융, 투자신탁, 증권회사, 카드회사 등

구 분	종합금융사	카드, 리스, 할부사	투자신탁회사	증권	
1. 영업수익	가. 이자 수익	이자수익 할인어음이자 배당금수익	이자수익 카드론 이자수익	이자수익 분배금수익 배당금수익	이자수익 분배금수익 배당금수익
	나. 수수료 수익	수수료 수익	수입수수료	수수료 수익	수수료 수익
	다. 기타 영업수익	어음매매익 상품·유가증권처분이익 상품·유가증권처분이익 파생금융상품거래이익 외환매매이익 기타금융수익 등	카드수익 할부금융수익 팩토링금융수익 리스수익 신기술금융수익 기타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 파생상품거래이익 기타영업수익 신탁업무운용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 파생상품거래이익 기타영업수익
2. 영업비용	가. 이자비용	이자비용	지급이자 사채이자	이자비용	이자비용
	나. 수수료비용	수수료 비용	지급 수수료	수수료비용	수수료 비용
	다. 기타 영업비용	상품유가증권처분손실 상품유가증권평가손실 파생금융상품거래손실 외환매매손실 신용보증기금출연금 기타금융수익	카드비용 리스비용 신기술금융비용 기타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신탁업무운용손실 파생상품거래손실	유가증권 처분손실 유가증권 평가손실 파생상품거래손실

※ 판매비와 관리비는 「일반은행」과 같음

■ 생명보험업과 도소매업의 손익계산서 구조 비교

생명보험업	도 소 매 업
I. 영업수익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보험 영업수익, 투자 영업수익 </div>	매출액
II. 영업비용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보험 영업비용, 투자 영업비용, 책임 준비금 전입액 등 </div>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III. 영업손익	좌동
IV. 기타수익, 특별계정수익	영업외수익
V. 기타비용, 특별계정비용	영업외비용
VI. 경상손익	좌동
VII. 특별이익	좌동
VIII. 특별손실	좌동
IX. 법인세차감전순손익	좌동
X. 법인세비용	좌동
XI. 당기순손익	좌동



■ 손해보험업과 도소매업의 손익계산서 구조 비교

손해보험업	도소매업
I. 영업수익 경과 보험료, 투자 영업수익 등	매출액
II. 영업비용 발생손해액, 장기저축성 보험환급금, 순사업비, 장기저축성 보험료 적립금 증가액, 비상 위험 준비금 증가액, 투자영업비용 등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III. 영업손익	좌동
IV. 영업외수익	좌동
V. 영업외비용	좌동
VI. 정상손익	좌동
VII. 특별이익	좌동
VIII. 특별손실	좌동
IX. 법인세차감전순손익	좌동
X. 법인세비용	좌동
XI. 당기순손익	좌동

■ 정부서비스생산자 세출결산서의 「목」분류와 14-1 조사항목 비교

◎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

결 산 과 목		조 사 항 목
100 (인건비)	101 기본급	㉠ 급여총액
	102 수당	"
	103 비정규직보수	"
200 (물건비)	201 관서운영비	
	01 일반수용비	㉡ 기타경비
	02 공공요금 및 제세	㉢ 세금과 공과(공공요금 제외) * 공공요금은 "㉡ 기타경비"로 조사
	03 피복비	㉡ 기타경비
	04 급량비	"
	05 특근매식비	"
	06 운영수당	"
	07 임차료	㉣ 임차료
	08 연료비	㉡ 기타경비
	09 시설장비유지비	"
	10 차량선박비	"
	11 재료비	"
	12 기타운영비	"
	202 여 비	"
	203 특수활동비	"
	204 업무추진비	
	01 일반업무비	㉡ 기타경비
	02 특정업무비	"
	03 직급보조비	㉠ 급여총액
	04 정원가산금	"
205 복리후생비	"	
206 용역비		
01 연구개발비	㉡ 기타경비	
02 위탁사업비	"	
207 시험연구비	"	
208 저장품매입비	"	
209 학교운영비	"	



결 산 과 목		조 사 항 목
1300 (경상이전)	301 보상금	
	01 보상금	조사 제외
	02 포상금 등	㉠ 급여총액
	302 배상금	조사 제외
	303 출연금	"
	304 민간경상이전	
	01 구료비	㉡ 기타경비
	02 민간경상 보조	"
	03 민간위탁금	조사 제외
	04 연금지급금	"
05 보험금	㉡ 기타경비	
06 이차보전금	조사 제외	
305 자치단체경상이전		
01 경상보조	㉡ 기타경비	
02 교부금	조사 제외	
03 교육잉여금	"	
306 ~ 308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등	"	
400 (자본지출경비)	401 ~ 414 기본조사설계비등	"
500 (융자, 출자금)	501 ~ 502 융자금 등	"
600 (보전지출)	601 ~ 604 국내차입금상환 등	"
700 (정부내부거래)	701 ~ 706 전출금 등	"
800 (예비비,기타)	801 ~ 803 예비비 등	"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

결 산 과 목		조 사 항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01 ~ 04)	㉠ 급여총액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제외) *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 일반운영비 중 제세공과금	㉡ 기타경비 ㉢ 임차료 ㉣ 세금과 공과	
	202 여비(01 ~ 04)	㉡ 기타경비	
	203 업무추진비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02 정월가산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4 기타업무추진비	㉡ 기타경비 ㉠ 급여총액 ㉡ 기타경비 ㉡ 기타경비	
	204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	
	205 의회비(01 ~ 07)	조사제외	
	206 재료비 01 재료비 02 일시사역인부임	㉡ 기타경비 ㉠ 급여총액	
	207 연구개발비(01 ~ 03)	㉡ 기타경비	
	300 (이전경비)	301 일반보상금(01 ~ 10)	㉡ 기타경비
		302 이주및재해보상금(01 ~ 02)	조사제외



결 산 과 목		조 사 항 목
300 (이전경비)	303 포상금	㉠ 급여충액
	304 연금부담금 등(01 ~ 02)	㉡ 퇴직급여
	305 배상금 등	조사제외
	306 출연금(01 ~ 02)	"
	307 민간이전	
	01 의료 및 구료비	㉢ 기타경비
	02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	㉢ 기타경비
	03 민간위탁금	조사제외
	04 보험금	㉢ 기타경비
	05 연금지급금	조사제외
	06 이차보전금	"
	308 자치단체이전(01 ~ 05)	"
	309 공기업경상전출금	"
310 해외이전	"	
311 차입금 이자	"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
	402 민간자본이전	"
	403 자치단체자본이전	"
	404 공기업자본전출금	"
	405 자산취득비	"
	406 기타자본이전	"
500 (융자 및 출자)	501 융자금	"
	502 출자금	"
600 (보전재원)	601 차입금 원금	"
700 (내부거래)	701 ~ 705 기타특별회계전출금등	"
800 (예비비 및 기타)	801 ~ 802 예비비 등	"

● 학 교

구 분	과 목	비 고
㉠ 급여총액	인건비	급여(교원·사무직원·임시직등의 봉급, 상여금, 기타 제수당 포함)
㉡ 퇴직급여	인건비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 복리후생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 임차료	리스·임차료(시설관리비)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 세금과 공과	제세공과금(일반운영비)	자동차세, 대한적십자회비 등
㉥ 감가상각비	-	-
㉦ 기타경비	입시경비, 홍보비, 회의비, 실험실습비 등	연구용 도서구입, 실험실습비, 논문심사료, 홍보비, 입시경비

●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

구 분	과 목	세 목
㉠ 급여총액	기본급(101) 전액	
	업무추진비(102)의 일부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02)
	재료비(204)의 일부	일시 사역 인부임(02)
	포상금(303) 전액	
㉡ 퇴직급여	연금부담금 등(301) 전액	
㉢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204) 전액	
㉣ 임차료	일반운영비(201)의 일부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 세금과 공과	일반운영비(201)의 일부	일반운영비 중 제세공과금
㉥ 감가상각비	-	-
㉦ 기타경비	일반운영비(201)의 일부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및 “세금과 공과”를 제외한 전액
	여비(202) 전액	
	업무추진비(203)의 일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01),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03), 기타 업무추진비(04)
	재료비(206)의 일부	재료비(01)
	연구개발비(207) 전액	
	일반보상금(301) 전액	
	민간이전(307)의 일부	의료 및 구료비(01),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 보조금(02), 보험금(04)



● 경찰병원 등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

구 분	과 목	세 목
㉑ 급여총액	기본급(101) 전액	
	수당(102) 전액	
	비정규직보수(103) 전액	
	업무추진비(204)의 일부	직급보조비(03), 정원가산금(04)
	보상금(301)의 일부	포상금 등(02)
㉒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205) 전액	
㉓ 임차료	관서운영비(201)의 일부	임차료(07)
㉔ 세금과 공과	관서운영비(201)의 일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02)의 제세공과금 * 공공요금은 “기타”로 조사
㉕ 감가상각비	-	-
㉖ 기타경비	관서운영비(201)의 일부	일반수용비(01),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02)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세금과 공과”으로 조사), 피복비(03), 급량비 (04), 특근매식비(05), 운영수당(06), 연료비(08), 시설장비 유지비(09), 차량선택비(10), 재료비(11), 기타운영비(12)
	여비(202) 전액	
	특수활동비(203) 전액	
	업무추진비(204)의 일부	일반업무비(01), 특정업무비(02)
	용역비(206) 전액	
	시험연구비(207) 전액	
	저장품매입비(208) 전액	
	민간경상이전(304)의 일부	구료비(01), 민간경상보조(02), 보험금(05)
자치단체경상이전(305)의 일부	경상보조(01)	

■ 제조원가 명세서

내역	포함되는 계정 과목	비고
I. 원재료비 (1+2-3)	1. 기초 원재료 재고액 2. 당기 원재료 매입액 3. 기말 원재료 재고액	리스, 렌탈, 제작, 판매원가명세서 등 업종에 따라 용어 상이(相異)리스, 렌탈, 제작, 판매원가명세서 등 업종에 따라 용어 상이(相異)
II. 노무비	- 임금, 잡급, 제수당, 퇴직급여 등 - 복리후생비	
III. 경비	- 수도광열비 - 세금공과금 - 수선비 - 차량유지비 - 지급임차료 - 감가상각비 - 접대비 및 기밀비 - 광고선전비 - 경상공발연구비 - 보험료 - 소모품비 - 운반·하역·보관·포장비 - 대손상각 - 기타	* 리스회계의 경우 지급이자, 외환차손, 운용리스자산처분손 등이 포함
IV. 총제조비용	[I + II + III]	
V. 기초재공품 재고액		
VI. 기말재공품 재고액		
VII. 타계정대체액		
VIII. 제조원가	[IV + V - VI - VII]	

CHAPTER
IV

CHAPTER
VI



조사 사례

1. 조사대상 사업체 및 조사방법

사 례	지도조치사항
<p>▶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사업체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조사하나?</p>	<p>☞ 각 시·군·구에서 관련조합별 등록명부를 입수하여 등록된 주민등록주소지를 사업체로 간주하여 해당 읍·면·동별로 배부한 후 조사표를 작성토록 함. 또한 조합에 등록된 주소지가 타 시·군·구로 변경된 경우도 등록된 조합을 주소지로 간주하여 관할 읍·면·동에서 일괄조사 함. (특히 각 시·군·구에서는 배부된 명부에서 조사 누락되는 사업체가 없도록 하여야 함)</p>
<p>▶ 5일장 내 사업체는 조사대상을 어떻게 파악하나?</p>	<p>☞ 장옥 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5일장 개장 당일에 조사</p>
<p>▶ 동일 경영자가 5일장을 순회하면서 서로 다른 지역의 장옥 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조사하여야 하나?</p>	<p>☞ 서로 다른 지역의 사업체를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해당 읍·면·동에서 조사하여야 하며, 매출액 등 모든 실적은 각 장옥별로 실적을 조사하여야 함</p>
<p>▶ 백화점 매장 중 임대매장 외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행사매장은 조사대상인가?</p>	<p>☞ 임대매장의 경우 통상 6개월 또는 1년동안 임대계약을 맺고 자체적으로 구매, 판매, 재고부담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임대매장은 각각 1개의 사업체로 조사하나, 행사매장의 경우는 영업이 단기간 이루어지고 주체도 수시로 바뀌므로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제외</p>
<p>▶ 부녀회, 동호회, 종친회, 조기회, 동창회 등의 조사대상은 어떻게 파악하나?</p>	<p>☞ 독립된 장소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종사자가 1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조사대상임. 이때 종사자수 조사시 회원수를 기입하면 안됨 ☞ 약국을 경영하면서 동창회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의 동창회는 조사대상이 아님</p>



사 례	지도조치사항
▶ 계절사업체인 경우는 조사대상인가?	☞ 계절업체인 민박, 해수욕장, 스키장, 눈썰매장 등은 2005. 1. 1. ~ 12. 31. 기간 중 1개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만 조사
▶ 하숙집 및 개인 피아노교습소 등은 조사대상인가?	☞ 간판 등을 이용하여 식별 가능한 경우만 조사
▶ 작목반, 어촌계, 축산계 등 협업 및 동업 조직 등은 조사대상인가?	☞ 별도의 작업장을 갖추고 상근, 비상근 계원 등이 사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전체 구성원을 묶어 1개 사업체로 조사. 이때 종사자수는 조직원 총수를 기입하고, 매출액은 조직구성원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총액을 기입함. 그러나 사무실 및 상근종사자가 1인 이상 근무하더라도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인 경우는 산업분류 91990으로 분류하고 종사자는 상근종사자만 조사
▶ 예비군 중대본부는 조사대상인가?	☞ 중대본부는 조사대상이 아님
▶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부대시설(경비소, 노인정 등)은 조사대상인가?	☞ 아파트단지내의 경비소, 노인정 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부대 관리시설로서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서는 안됨
▶ 학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농장, 염전 등은 조사 대상인가?	☞ 학교재단과는 별개로 농장은 농업사업체로, 염전은 광업 사업체로 별도 조사
▶ 아파트관리 사무소 내(內) 또는 마을 어귀에 있는 『노인정』은 조사대상인가?	☞ 조사대상이 아님 ※ 조사대상이 되는 노인정은 노인정 업무를 위한 별도의 종사자(유급 또는 무급)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고 동네 노인들의 친목단체 성격의 노인정은 조사대상이 아님
▶ 자동차대리점의 딜러를 별도의 사업체로 보는가?	☞ 별도 사업체로 조사하지 않고 당해 사업체(자동차대리점)의 종사자로 조사

사 례	지도조치사항
▶ 개인이 경영하는 조경(잔디식재, 나무 식재 등)사업체는 조사대상인가?	☞ 조경 및 관련서비스업(관상수손질, 잔디심기, 정원관리, 나무 식재등)은 농업으로 분류되나, '개인'이 경영하는 조경사업체는 조사대상이 아님
▶ 행정구역경계선상에 있는 사업체는 어떻게 조사하여야 하나?	☞ 행정구역경계선상에 있는 사업체는 인접 읍·면·동 담당자와 협의하여 중복 및 누락이 없도록 함
▶ 조사구 설정 이후 누락된 전입사업체는 사업체일련번호를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나?	☞ 해당조사구의 맨 마지막 사업체일련번호에 이어서 부여함
▶ 개인이 경영하는 관광농원은 조사대상인가?	☞ 관광농원은 대부분 농산물판매, 기념품판매, 숙박시설, 음식점 등 대부분이 2가지 업종을 겸업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임. 이 경우 6 조직형태는 「① 개인사업체」, 7 사업체 구분은 「① 단독사업체」, 7 산업분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기입
▶ 버스타에서 자체 영업용 차량의 기름을 공급하기 위하여 동일장소에서 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주유소도 조사대상인가?	☞ ① 자체차량에만 기름 공급을 하는 경우 → 버스타만 조사 ② 자체차량 공급 외에 일반판매도 할 경우 →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 제조업체 또는 도·소매업체에서 자기 제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소에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창고도 조사대상인가?	☞ 별도의 장소에 상근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면 별도의 사업체로 조사
▶ 개인용달의 경우 조합의 명부에 1인이 자기 명의로 7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개인용달을 이용하여 화물운송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조사 방법은?	☞ 별도로 운영하는 화물운송회사를 사업체로 파악하여 조사



사 례	지도조치사항
<p>▶ 개인이 자기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하였을 경우 조사대상인가?</p>	<p>☞ ① 타인에게 임대한 임대업자는 독립적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조사대상임</p> <p>☞ ② 자기집에서 건축물 일부를 임대했을 경우는 조사대상이 아님</p>
<p>▶ 임대업 중 조작자가 딸린 운수 및 기계장비 임대와 운수 및 기계장비만 임대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p>	<p>☞ ① 조작자가 딸린 경우는 운수업(중분류 60 ~ 63)으로 조사</p> <p>☞ ② 조작자가 딸리지 않은 경우는 임대업(중분류 71)으로 조사</p>
<p>▶ 5일장에서 영업하는 소매업의 경우 조사 대상 및 연간 조업한 개월수, 매장면적은 어떻게 조사하는가?</p>	<p>☞ ① 조사대상 ⇒ 일정한 고정 설치물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체이며, 다수의 시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p> <p>☞ ② 연간 조업한 개월 수 ⇒ 실제 영업 활동을 한 개월 수</p> <p>☞ ③ 매장면적 ⇒ 영업을 위한 고정 설치물 면적</p>
<p>▶ 커피, 음료, 기타 물건을 판매하는 각종 자동판매기의 경우 이들 자동판매기별로 각각 조사하는가?</p>	<p>☞ 자동판매기 각각을 조사하지 않음. 즉, 각각의 자동판매기는 조사대상이 아님(다만, 자판기 관리를 위한 일정한 사무실을 두고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임. 이때, 이 사무실에서 여러 대의 자판기를 운영하는 경우 매출액에 모든 자판기의 실적부분을 기입하여야 함)</p>
<p>▶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장소를 달리하여 여러 개 있는 경우 조사방법은?</p>	<p>☞ 2 대표자명 : 모두 본점의 자영업주명으로 조사</p> <p>☞ 6 조직형태 : 모두 ① 개인사업체</p> <p>☞ 7 사업체구분</p> <p>※ 본점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체 : ② 본사(점)</p> <p>기타 사업체 : ③ 지사(점), 영업소, 공장</p> <p>☞ 9 종사자수 : 모든 사업체의 「자영업주」란에 본점 자영업주 성별에 따라 1명을 추가로 기입함(모든 개인사업체는 자영업주가 있어야 함)</p>

사 례	지도조치사항
<p>▶ 교회 또는 사찰 등 종교단체 내(內:동일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선·포교원 또는 어린이집 등의 조사 여부 및 조사방법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와 선·포교원, 어린이집의 회계장부가 통합된 경우 : 종교단체와 선·포교원, 어린이집을 합쳐 1개의 사업체로 조사 함 ☞ 종교단체와 선·포교원, 어린이집의 회계장부가 독립된 경우 : 종교단체와 선·포교원, 어린이집을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함 ※ 6 조직형태 : 종교단체의 조직형태와 동일하게 기입 ※ 사업체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 : ③ 지사(점)(해당 종교단체를 직접 관할하는 별도의 중단·총회가 있는 경우) 또는 ② 본사(점) • 선·포교원, 어린이집 : ③ 지사(점) ※ 산업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및 선교·포교원에서 보육사업을 하는 경우 : 86210(보육시설) • 순수 선교·포교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 9191*(종교단체)
<p>▶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무사가 공동으로 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업실적을 배분 하는 경우 사업체의 조사 방법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법률사무소만을 사업체로 하고 법무사 개개인은 합동 법률사무소의 종사자로 조사함
<p>▶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한 여러 명의 중기업자가 한 사무실에서 산업활동을 수행 하는 경우 사업체수,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대표자명: 중기업자중 1인 ☞ 사업체수 : 1개(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 6 조직형태 : 법인등록 여부에 따라 「③ 회사이외의 법인」 또는 「⑤ 비법인단체」 ☞ 7 사업체구분 : 「① 단독사업체」 ☞ 9 종사자수 : 개별 중기업자는 모두 상용종사자로 조사 ☞ 산업분류: 46500(건설장비 운영업) <p>주) 이때, 사무실의 개설(운영) 주체는 중기업자임</p>



2. 조사대상 사업체의 누락 및 중복

사 례	지도조치사항
<p>▶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개인택시, 개인화물, 개인용달 사업체의 조사 누락</p>	<p>☞ 이 경우 반드시 조사 전에 조합에서 명부를 입수하여 등록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함(특히 조합에 등록된 주소지가 타 시·군·구로 변경된 경우도 등록된 조합을 주소지로 간주하여 관할 읍·면·동에서 일괄 조사함)</p>
<p>▶ 빌딩내에 있는 사업체를 일부만 조사하고 대부분 사업체를 누락시킨 경우</p>	<p>☞ 관리사무소의 안내를 받아 각 층마다 일일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누락사업체가 없도록 특히 유의</p> <p>☞ 대도시 빌딩(상가)내에 여러 개의 사업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빌딩입구에서 간판만 보고 2 ~ 3개 사업체만 조사하여 누락된 사업체가 다수 발생</p>
<p>▶ 지하실, 옥상 등에 소재하는 사업체를 발견하지 못하여 누락시킨 경우</p>	<p>☞ 조사 담당공무원은 해당지역 통·리·반장의 협조를 받아 누락사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p>
<p>▶ 농촌, 산간, 도서 등 오지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체(사찰, 기도원, 연수원,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및 공원 내 점포 등)를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조사 누락</p>	<p>☞ 조사 담당공무원은 해당지역 통·리·반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p>
<p>▶ 사업체가 응답을 거부하여 조사누락</p>	<p>☞ 사업체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질문유형과 응답방법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에도 응답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관리자와 지도공무원에게 보고</p>

사 례	지도조치사항
▶ 대도시 지역의 경우 경계가 불명확하여 조사담당자가 착오로 사업체를 누락	☞ 조사구요도에 의해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통·반 또는 통계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누락사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계절적인 사업체를 임의로 누락시킴	☞ 연간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조사 대상이므로 필히 조사 ☞ 예 민박, 해수욕장, 얼음공장, 콘크리트공장, 벽돌공장, 농촌 지역 정미소, 실외수영장, 스키장, 눈썰매장 등
▶ 도시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가 앞으로 철거될 예정이라 하여 조사 누락	☞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조사당시 사업체가 존재하는 경우 필히 조사
▶ 유흥업소를 누락시킴	☞ 유흥업소는 사업주를 만나기 어렵고 응답을 거부하기 때문에 누락이 다수 발생하므로 지도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대규모 사업체내에 있는 협력업체와 공장 안에 소재하고 있는 소사장 공장 등이 간판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 누락	☞ 대규모 사업체의 총무과 등에 협조를 받아 협력업체명단을 파악하여 누락이 없도록 조사하고 공장안의 공장인 소사장 사업체가 있는지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함
▶ 청과물, 수산물 중개인은 새벽에 업무를 마치고 낮에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조사누락	☞ 낮에 만나기 힘든 중개인은 전화번호 등을 파악, 조사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하여 조사 누락이 없도록 특히 유의
▶ 간판 없이 영세규모로 제조(금·은세공, 상패제작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를 조사 누락	☞ 조사기간 중 간판이 없는 영세제조 사업체도 확인, 방문하여 조사토록 함
▶ 군부대 및 군사시설 내에서 개인이 경영하는 유치원의 조사 누락	☞ 군사시설 내라도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 대상



사 례	지도조치사항
<p>▶ 동일한 장소에서 경영장부가 함께 처리되는 사업체를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하거나, 겸업사업체를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p>	<p>☞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식품, 잡화, 담배를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 1개의 사업체로 조사하여야 하며, 담배코너를 별도 1개 사업체로 추가 조사하여서는 안됨(그러나 경영주가 다른 사람이 담배 또는 토권을 판매하는 경우는 별개 사업체로 조사)</p> <p>☞ 금·은방을 경영하면서 시계부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로 조사하여야 하나 금·은부, 시계부를 2개의 사업체로 잘못 분리하여 조사(그러나 금·은방과 시계부를 경영주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경우는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p> <p>☞ 열관리시공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보일러 판매와 설비 공사를 동시에 병행하는 경우 1개의 사업체로 조사해야 하며, 건설업과 판매업(도·소매업)을 별개 사업체로 조사하여서는 안됨</p>
<p>▶ 조사구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중복조사</p>	<p>☞ 대도시 및 사업체밀집지역은 조사구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하나의 사업체를 두 번 이상 중복조사(사업체밀집지역은 인접 조사구담당자와 협의하여 서로의 조사구 경계를 명확히 구분 시켜야 함)하지 않도록 주의</p>

3. 조사 항목별 사례

1 사업체명

사 례	지도조치사항
▶ 간판이나 상호가 없는 조그만 구멍가게의 사업체명 기입 방법은?	☞ 상호가 없는 사업체는 대표자명이나 주요 취급상품명을 기입
▶ 회사법인의 사업체명 조사시 통일된 기준이 있는가?	☞ 회사법인의 경우 사업체명은 반드시 (본사명) + (법인형태) + (지사·점명)순으로 기입 예 한국타이어(주) 수원공장, 삼성전자(주) 부산영업소, 롯데제과(주) 광주영업소 등

2 대표자명

사 례	지도조치사항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대표자명 조사방법은?	☞ 관할,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해당 사업체의 대표자를 조사 예 보건소는 보건소장,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소는 진료원을 대표자로 조사
▶ ○○제과 △△영업소의 경우 대표자명 조사방법은?	☞ ○○제과의 사장이 아닌 △△영업소의 소장을 대표자로 조사
▶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로는 남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부인(女)인 경우의 조사방법은?	☞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부인을 기준으로 대표자명, 성별, 종사자 등을 조사.

4 소재지

사 례	지도조치사항
▶ 소재지 조사 시 일부 시군구의 경우 행정동 및 통반을 광역화하여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이 다른 경우 조사 동명은?	☞ 법정동명을 기준으로 조사



3 창설년월 및 **5** 사업장 변동

사 례	지도조치사항
▶ 2006년 1월에 창설한 사업체는 어느 항목까지 조사하는가?	☞ 9 항 종사자 수까지만 조사 ☞ 10 항 연간총매출액 이후는 조사하지 않음
▶ '95년 3월부터 슈퍼를 경영하다 같은 장소에서 '99년 3월에 식당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재 창업한 경우 창설 년월은?	☞ 업종을 변경(G. 도소매업 → H. 숙박·음식점업)하여 재 창업한 '99년 3월로 조사. 사업장 변동은 "① 사업장 존속" ※ 업종을 변경했다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영문 A~T)가 변경된 경우를 말함
▶ '95년 3월부터 다방을 경영하다 같은 장소에서 '99년 3월에 한식당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재 창업한 경우 창설 년월은?	☞ 다방과 한식당은 동일한 산업 대분류(H. 숙박·음식점업)이므로 처음 다방으로 개업한 '95년 3월로 조사. 5 사업장 변동은 「① 사업장 존속」
▶ ○○제과 본사는 '99년 1월에 창업하고 △△영업소는 '00년 1월에 창업한 경우 △△영업소의 창설 년월은?	☞ 본사의 창설 년월이 아닌 △△영업소의 창설 년월인 '00년 1월로 조사
▶ '95년 3월부터 ○○식당을 전주에서 경영하다 '99년 3월 대전으로 이전하여 ○○식당으로 재 창업한 경우 창설 년월은?	☞ 개인사업체의 경우 이전한 경우에는 법인사업체와 달리 이전하여 재창업 한 창설 년월로 조사. 그러므로 ○○식당의 창설 년월은 '99년 3월로 조사
▶ '95년 3월부터 ○○전자(주) 전북영업소가 군산에서 영업하다 '99년 3월 전주로 이전한 경우 창설 년월은?	☞ 법인사업체의 경우 이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체와는 달리 최초 창설 년월로 조사. 그러므로 ○○전자(주) 전북영업소의 창설 년월은 '95년 3월로 조사 ※ 이전한 사업체의 창설 년월은 법인사업체(5 조직형태의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⑤ 비법인단체와 ① 개인사업체 (5 조직형태의 ① 개인사업체만 해당)가 다르니 특히 유의
▶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창설 년월을 어떻게 조사하나?	☞ 개인사업체가 상속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영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이전된 시기를 창설 년월로 조사

6 조직형태

사 례	지도조치사항
<p>▶ 롯데리아 ○○점인데 조직형태와 사업체 구분 조사 방법은?</p> <p>※ 유사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맥주 체인점 : 미스터 세븐, 비어플러스, 시리우스호프 등 - 치킨집 체인점 : 페리카나치킨, 처갓집, 양념통닭, 아이큐치킨 등 - 카센타 체인점 : 스피드메리트, 카멘샵 등 - 의류업 체인점 : 아가방, 뽕뽕, 인파르시아, 인디안, 파크랜드 등 	<p>☞ 롯데리아의 지점 영업형태</p> <p>① 직영점(본사에서 직원을 직접 채용 하여 영업하며 매출 및 비용을 본사에서 일괄 관리함)</p> <p>➔ 6 조직형태 : ② 회사법인, 7 사업체 구분 : ③ 지사(점)로 조사</p> <p>② 가맹점 또는 체인점(일정액의 보증금을 본사에 지불하고 개인이 직접 영업함. 직원은 본사의 직원이 아니고 개인 사업주가 직접 채용 관리함)</p> <p>➔ 6 조직형태 : ① 개인사업체, 7 사업체 구분 : ① 단독사업체로 조사</p>
<p>▶ 보루네오 ○○대리점인데 조직형태와 사업체구분 조사 방법은?</p> <p>※ 유사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대리점 : 노송, 파로마, 장인, 라자 등 - 가전 대리점 : 삼성전자, LG전자, 삼보 컴퓨터, 현주컴퓨터 등 	<p>☞ 보루네오 대리점 영업형태</p> <p>① 직영대리점(본사에서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영업하며 매출 및 비용을 본사에서 일괄 관리함)</p> <p>➔ 6 조직형태 : ② 회사법인, 7 사업체 구분 : ③ 지사(점)로 조사</p> <p>② 가맹대리점(일정액의 보증금을 본사에 지불하고 개인이 직접 영업함. 직원은 본사의 직원이 아니고 개인 사업주가 직접 채용 관리함)</p> <p>➔ 6 조직형태 : ① 개인사업체, 7 사업체 구분 : ① 단독사업체로 조사</p>



사 례	지도조사사항
<p>▶ 종교단체의 조직형태 및 사업체구분은?</p>	<p>☞ 6 조직형태 : 법인등록 여부에 따라 ③ 회사이외법인 또는 ⑤ 비법인단체</p> <p>☞ 7 사업체구분 : 종단 및 총회소속으로 인사, 예산 등에 관하여 종단 및 총회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는 산하 종교단체가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단 및 총회 : ② 본사(점) • 종단 및 총회의 산하 종교단체 : ③ 지사(점) <p>* 교리만 따를 뿐 인사, 예산 등이 서로 독립된 경우 : ① 단독 사업체</p> <p>※ 단순히 교리만 따른다 하여 무조건 그 종파의 ③ 지사(점)로 조사해서는 안됨</p>
<p>▶ 본사인 회사법인에서 사무소를 개설해 주고 종사자가 실적에 따라 수당이나 수수료를 받는 경우 조직형태, 종사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p>	<p>☞ 6 조직형태는 ② 회사법인, 7 사업체 구분은 ③ 지사(점)</p> <p>7 종사자수는 (5) 무급종사자, 수당이나 수수료는 급여 총액로 조사</p>
<p>▶ 시립도서관의 경우 조직형태 및 사업체 구분, 사업체건물 소유형태는 어떻게 구분하는가?</p>	<p>☞ 6 조직형태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p> <p>7 사업체 구분 : ① 단독사업체</p> <p>12 사업장 건물면적 : ① 소유</p> <p>※ 15 유형자산은 시립도서관의 자산으로 조사</p>
<p>▶ 특정인이 보험회사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영업소 (즉, 개인이 설립한 보험회사의 영업소)의 조직형태와 사업체구분은 ?</p>	<p>☞ 6 조직형태 : ① 개인사업체</p> <p>☞ 7 사업체 구분 : ① 단독사업체</p>
<p>▶ 무속인, 점술인의 조직형태는?</p>	<p>☞ 6 조직형태 : ① 개인사업체</p>

7 사업체 구분

사 례	지도조치사항
▶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조사단위와 사업체 구분은?	☞ 각각을 개개의 사업체로 간주하고, 7 사업체구분은 「① 단독사업체」에 해당
▶ 관공서 및 그 기관의 지청 및 (지방)사무소, 출장소 등의 사업체 구분은?	☞ 7 사업체구분은 「① 단독사업체」로 조사(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 농협도지부, 군지부 등의 사업체 구분은?	※ 4 조직형태의 「④ 국가·지방자치단체」로 조사된 사업체는 모두 「① 단독사업체」로 조사함
▶ 농협도지부, 군지부 등의 사업체 구분은?	☞ 농협도지부, 군지부 등은 「③ 지사(점), 영업소, 공장 등」에 해당하나, 단위농협 및 어촌계 등은 「① 단독사업체」에 해당
▶ 「신문지국」과 「보급소」중 지국이라는 명칭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구분은?	☞ 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국은 「③ 지사(점), 영업소, 공장 등」에 해당 그러나 개인이 운영하는 지국, 보급소 등은 「① 단독사업체」에 해당



8 사업의 종류

사 례	지도조치사항
<p>▶ 가방 판매업체인데 도매와 소매를 겸하고 있는 경우 조사 방법은?</p>	<p>☞ 도매부문과 소매부문을 구분하여 사업내용을 기입하고 부가가치(액)의 크기가 큰 순서로 기입. 특히, 사업비중 조사 시 사업주가 매출액을 반반이라고 답변한 경우 50대 50으로 조사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재확인하여 어느 한 부문이 많게 조사되어야 됨</p> <p>※ 이와 같은 겸업 사업체는 부문별 부가가치(액)의 비중을 정확히 조사하여 기입해야 됨</p> <p>☞ 가전제품 판매와 수리, 시계 판매와 수리, 정육점과 음식점 겸업 등</p> <p>※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매출)액에 의하여 순위 결정</p>
<p>▶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산업 분류는?</p>	<p>☞ 태권도 도장 운영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88391)으로 조사</p> <p>※ 일반학원으로 조사하면 안 됨</p>
<p>▶ 에어로빅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산업 분류는?</p>	<p>☞ 에어로빅 학원운영, 에어로빅 체육관운영, 에어로빅 시설 운영은 모두 체력단련시설 운영업(88391)으로 조사</p> <p>※ 일반학원으로 조사하면 안 됨</p>
<p>▶ 웅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산업 분류는?</p>	<p>☞ 웅변학원 운영은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80999)으로 조사</p> <p>※ 일반학원으로 조사하면 안 됨</p>
<p>▶ 어린이 집 운영업의 산업분류는?</p>	<p>☞ 교육원생 중 5세 이상의 어린이가 많으면 유아교육기관(80110)으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많으면 보육시설(86210)로 조사</p> <p>※ 반드시 연령별 교육원생의 비중을 파악하여 조사</p>
<p>▶ 학습지를 이용한 가정 방문 교육업의 산업 분류는?</p>	<p>☞ 눈높이, 빨간펜, 공문 등의 사업체는 방문판매업(52893)이 아닌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80933)으로 조사</p> <p>※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체가 많으니 특히 유의</p>

사 례	지도조치사항
<p>▶ 간판에 ○○슈퍼로 되어있는 경우 산업 분류를 모두 슈퍼마켓(52121)로 조사해도 되나?</p>	<p>☞ 단일 경영주체가 음·식료품을 위주로 각종 생활잡화 등을 소매하는 경우(통상 슈퍼라고 함)는 매장면적에 따라 산업 분류가 결정되니 특히 유의하여 조사</p> <p>- 매장면적 3,000m²이상(대형할인점 등) : 기타 대형종합 소매업 (52119)</p> <p>- 매장면적 165 ~ 3,000m² : 슈퍼마켓(52121)</p> <p>- 매장면적 165m²미만 :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52129)</p> <p>※ 또한, 백화점(52111), 24시간 편의점(52122)은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니 주의</p> <p>< 편의점(52122) 예시 ></p> <p>세븐 일레븐, GS25시, 키티마트, 미니스톱 등</p> <p>※ 매장면적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각종상품을 진열하고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만을 의미함(상품을 저장하는 창고, 사무업무를 보는 사무실 등 면적은 제외됨)</p>
<p>▶ 객실수가 30실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호텔도 호텔업으로 조사해야 되나?</p>	<p>☞ 호텔업(55111)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숙박업과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는 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의미하므로 객실수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호텔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호텔업으로 조사</p> <p>※ 호텔업 : 관광호텔, 해상관광호텔, 국민호텔, 가족호텔, 한국 전통호텔, 일반호텔 등</p> <p>※ 휴양콘도미니엄은 휴양콘도운영업(55113)으로 별도 조사하니 착오없도록 주의</p>
<p>▶ 농약, 비료 등을 농민에게 주로 판매하는 농약상의 경우 도매업(51) 인지 소매업(52)인지?</p>	<p>☞ 산업사용자에게 판매함으로 도매업(51)으로 조사</p>



사 례	지도조치사항
▶ 지방자치단체에서(시·군·구) 민간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석산개발을 하는 경우의 산업분류는?	☞ 「74493」 지질조사 및 탐사업으로 분류함. 탐사개발하여 채석장을 운영하는 경우 「12121」건설용 석채채굴업으로 분류함.
▶ 시·군·구에서 경영수익사업인 노상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차장의 산업 분류는?	☞ 6 조직형태는 4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며, 7 사업 구분은 1 단독사업체로 기입하며 8 산업분류는 「63915」 주차장운영업으로 분류
▶ 익스프레스 등 포장운송사업체의 산업 분류는?	☞ 5톤 이상의 경우 「60311」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5톤 미만 및 개별화물의 경우 「60312」용달 및 개발화물자동차운송업으로 분류
▶ 인장(도장)포는 제조업인가? 그렇다면 산업분류는?	☞ 인장(도장)포는 제조업으로 분류 ☞ 산업분류는 「36960」사무 및 회화용품제조업으로 분류
▶ 간판 및 광고물제조업의 산업분류는?	☞ 비전기식은 「3695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으로 분류 ☞ 전기식(네온사인 등)은 「31522」광고용조명장치제조업으로 분류
▶ 보일러 시공업체의 산업분류는?	☞ 「46201」배관, 냉난방공사업으로 분류
▶ 전기 공사업체의 산업분류는?	☞ 전기 1·2종 모두 「46312」 내부전기배선공사업으로 분류
▶ 자동차용 백미러제조업의 산업분류는?	☞ 「26122」판유리가공품 제조업으로 분류
▶ 뉴스를 제공하는 연합통신사의 산업분류는?	☞ 「88100」 뉴스 제공업으로 분류
▶ 제품의 A/S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수 리센터에 통보하여 주는 사업체의 산업분 류는?	☞ 「75942」(텔레마케팅서비스업)

사 례	지도조치사항
▶ 선박용 내연기관을 수리하는 경우 산업 분류는?	☞ 선박용 내연기관을 수리하는 경우는 선박의 부품을 수리하기 때문에 「92119」 기타 일반기계 수리업으로 분류
▶ 수도사업소의 산업분류는?	☞ 「41010」 생활용수 공급업 또는 「41020」 산업용수 공급업으로 분류
▶ 상공회의소의 산업분류는?	☞ 「91110」 산업 및 경영자단체로 분류
▶ 광복회, 도민회, 시민회 등 산업분류는?	☞ 「91990」 그외 기타 회원단체로 분류
▶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세무사협회의 산업분류는?	☞ 「91120」 전문가 단체로 분류
▶ 국립묘지관리사무소의 산업분류는?	☞ 「93922」 묘지 및 화장업으로 분류
▶ 공무원교육원, 연수원, 훈련원의 산업 분류는?	☞ 「80912」 직원훈련기관으로 분류
▶ 여론조사기관의 산업분류는?	☞ 「7421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으로 분류
▶ 음식점업과 소형가게를 겸업하는 경우 산업분류는?	☞ 주된 사업내용(매출액이 많은)으로 분류
▶ 교육청산하 각종 교육원의 조사여부 및 산업분류는?	☞ 교육원은 산업분류 80912(직원훈련기관)임
▶ 여관이나 모텔의 객실수가 30실 이상이면 호텔로 조사하여야 하나?	☞ 호텔업은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법의 의거 등록된 호텔로, 등록된 사업체가 아니라면 여관업(55112)으로 조사



사 례	지도조치사항
▶ 시립도서관의 산업분류는?	☞ 88211(도서관 및 기록보존소)로 분류
▶ 해양수족전시관 등 전시관, 박물관의 산업분류는?	☞ 가. 해양수족관 ① 살아있는 각종 어패류의 관람 장소 (예) 63빌딩 내 해양수족관인 경우 → 88231(식물원 및 동물원) ② 판매를 목적으로 살아있는 각종 어패류를 관람시키는 경우 → 52692(관상어 소매) 나. 전시관 ① 판매하지 않고 순수 관람형태로 운영할 경우(주로 유료) → 88221(박물관 운영업) ② 판매를 목적으로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을 관람시키는 경우 → 52661(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③ 판매를 목적으로 장식성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을 관람시키는 경우 → 52662(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다. 박물관 → 88221(박물관 운영업)
▶ 무선전화(무선호출기 포함)의 기기 판매업 및 통신서비스업을 겸할 경우 산업분류는 어느 업종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 ① 기기 판매업은 52514(통신기기소매업) ② 통신서비스업은 무선통신업(6422) ③ 겸업의 경우 매출액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하여 조사
▶ 주거용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산업분류 및 조직형태의 구분은?	☞ ① 산업분류 → 70211(주거용 부동산관리업) ② 조직형태는 ⑤ 비법인단체
▶ 횃집의 경우 한식과 일식을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	☞ 정통일본식 횃집을 제외하고 한식으로 구분
▶ 114안내서비스, 콜센터 등의 산업분류는?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 캡스, 세콤의 산업분류는?	☞ 정보시스템 서비스업(75913)

사 례	지도조치사항
▶ 객실수입보다 욕탕 및 음식점수입이 많은 호텔업의 경우 산업분류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 및 욕탕시설은 호텔업의 편의시설에 속하므로 55111(호텔업)으로 분류 ※ 관광진흥법 제3조(2005.12.31. 현재)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예식장으로 분류되어있는 사업체가 음식 점업을 겸업하고 예식장 사용료는 무료일 경우 산업분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사업이 예식장이므로 예식장업(93991)로 분류
▶ 골프장으로 분류된 사업체의 수입구성비가 골프장수입 80%, 골프용품소매 및 음식점 수입 20%일 경우 조사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산업분류 ➔ 88331(골프장 운영업) ② 소매용 골프용품 구입비, 음식재료매입비 등은 재료 구입비로 조사
▶ 주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기업체에 컴퓨터 등을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91(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로 분류
▶ 교육박물관의 산업분류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관련 자료를 관람하게 한 경우이므로 88221(박물관 운영업)로 분류
▶ 농촌진흥청 제주감귤연구소의 산업분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102(농학연구 개발업)로 분류
▶ PC 게임방, 인터넷 게임방의 산업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88912(컴퓨터 게임방 운영업)로 조사 ② 게임방 산업분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가 아닌 전자게임기를 사용할 경우 ➔ 88911(전자게임장운영업) •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 88912(컴퓨터게임방 운영업)
▶ 무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 및 매출원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산업분류 ➔ 51731(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② 매출원가 ➔ 수집에 따른 운송비 등



사 례	지도조치사항
▶ 베틀시장,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 발행 업체의 산업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 22123(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으로 분류
▶ 보일러도매업체가 보일러설비를 겸할 경우 산업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 도매와 설비 중 주산업부문(부가가치 혹은 매출액 비중이 높은 부문) ➔ 보일러설비부문이 많을 경우 46201(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으로 분류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의 사업체가 산업 분류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의 체력단련 시설을 운영하였을 경우 산업분류는?	☞ 88395(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
▶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상품을 판매원이 방문하여 판매하는 경우 산업분류 및 매장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 ① 산업분류 ➔ 52893(방문판매업) ② 매장면적 ➔ 0(528, 무점포소매업)
▶ 우유, 신문 등의 계약배달 판매의 경우 산업분류는?	☞ 52892(계약배달판매업)
▶ 건축물 일반청소업(75922)과 인력공급업(75121)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가?	☞ ① 인력 공급업 :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인력을 공급하되 자기 관리 하에 인력을 확보하여 수요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 그 인력을 제공하고 수요자에게 대가를 받아 피고용자에게 자기가 직접 급료를 주는 형태 ② 건축물 일반 청소업 : 자기관리 하에 건물의 청소를 전문으로 하고 청소의 대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형태
▶ 떡을 제조하여 파는 경우 떡제조업과 떡소매업으로 주산업, 부산업으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산업분류는?	☞ 주산업은 제조업으로 산업분류 15412

사 례	지도조치사항
▶ 병원 세탁물을 수거하여 전문적인 세탁을 하는 사업체로 세탁공장 시설이 되어있고 제조원가도 작성되고 있는데 이 경우 산업분류를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가?	☞ 93913(세탁물 공급업)
▶ 빵 및 과자류 소매업(52215)과 제과점업(55241)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가?	☞接客시설이 있으면 제과점업이며接客시설이 없고 소매만 하는 경우는 빵 및 과자류 소매업임
▶ 장의사업의 산업분류는?	☞ ① 운송만 하는 경우 ➔ 60233(장의차량 운영업) ② 운송과 장의용품을 취급하는 경우 ➔ 93921(장례식장 및 장의업) ③ 운송, 장의용품 취급 및 장례식장 운영 ➔ 93921(장례식장 및 장의업)
▶ 관상수 및 분재를 도매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 ① 51204(화초 및 산식물도매업) ※ 51202(묘목도매업)이 아님에 유의
▶ 건설자재 판매업의 산업분류는?	☞ ① 건설업자에게 판매 ➔ 515에서 종류별로 구분 ② 일반소비자(자가사용자)에게 판매 ➔ 52619(기타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소매업)
▶ 숙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산업분류는?	☞ ① 55199(그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 교육업이 아님에 유의
▶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산업분류?	☞ 70129(기타 부동산 공급업)
▶ 대한주택공사의 산업분류는?	☞ 70121(주거용 건물 공급업)
▶ 대한지적공사의 산업분류는?	☞ 74491(측량업)
▶ 뉴스를 취재(주재 포함), 공급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 ① 자유기고가, 뉴스통신원, 사진작가, 만화가의 서비스 등 ➔ 87332 ② 방송사 소속 ➔ 872 중에서 분류 ③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사업체 소속 ➔ 2212 중에서 분류 ④ 방송사 등에 뉴스리포트, 뉴스사진 등을 공급 ➔ 88100(뉴스제공업)



사 례	지도조치사항
<p>▶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개, 도·소매를 주로 하는 개인사업체의 산업분류는?</p>	<p>☞ ① 중개업자가 농(수)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 받지 않고 단지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중개만 하는 경우 : 51102(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p> <p>② 중개업자가 농산물(과실, 채소 등)을 직접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 : 51311(과실 및 채소 도매업)</p> <p>③ 중개업자가 수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 : 51313(수산물 도매업)</p> <p>④ 중개업자가 농산물(과실, 채소 등)을 구입하여 일반점포에서 직접 소매하는 경우: 52214(과실 및 채소 소매업)</p> <p>⑤ 중개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일반 점포에서 직접 소매하는 경우 : 52213(수산물 소매업)</p> <p>※ 위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조사에 특히 유의</p>
<p>▶ 대화방, 전화방의 산업분류는?</p>	<p>☞ 93999(그외 기타 분류 안된 모든 서비스업)</p>
<p>▶ 의류중고품 소매의 산업분류는?</p>	<p>☞ 52709(기타중고품 소매업)</p>
<p>▶ 극장의 산업분류는?</p>	<p>☞ 공연장운영(극장, 음악당, 연극장)인 극장의 경우 87311로 분류</p> <p>※ 영화상영(영화관) : 87141 영화상영(비디오감상실) : 87142 공연장운영(서커스 등 : 극장 제외) : 87329</p>
<p>▶ 노상에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산업분류는?</p>	<p>☞ 시설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동음식점업(55223)이므로 조사대상의 사업체임</p>
<p>▶ 노점상이 도소매업으로 분류된 경우 있는 경우는?</p>	<p>☞ 시설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노점 및 유사아동판매업 (52820)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p>

사 례	지도조치사항
▶ 남제주 수산종묘배양장의 산업분류는?	☞ 73102(농학연구 개발업)로 분류
▶ 공문수학, 눈높이영어, 튼튼영어 등 방문하여 학습지를 판매하고 일정시간 교육을 시키는 경우 산업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 80933(방문 및 통신 교육학원)
▶ 사업체 명칭에 의한 오류	① 음식백화점(음식업 : 55***), 천냥백화점 (잡화소매 : 52***) 등을 백화점업(52111)로 착오 조사
▶ 재화나 상품명에만 비중을 두고 색인명을 찾아 생긴 오류	② 노인대학(80991)을 대학교(80302)로 착오 조사
▶ 재화나 상품명에만 비중을 두고 색인명을 찾아 생긴 오류	① 수도 공사업(건설업 : 45129)을 수도사업(41010 또는 41020) 으로 착오 조사
▶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	② 전기공사업(건설업 : 46312)을 전기업(40122)으로 착오 조사
▶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	① 사업내용을 '판매' 라고 막연하게 기입하여 산업분류 착오 조사
▶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	② 각종 협회에서 회원사를 위한 간행물(협회지) 발간수입이 크다고 하여 협회를 서적출판업(22110)으로 착오 조사, 이 경우 각종 협회의 산업분류는 회원단체(91***)로 분류
▶ 일반전화 가입대행, 국제전화 회원모집 등과 같은 한국통신의 업무를 대행 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 75942(텔레마케팅서비스업)
▶ 산업용 냉장고를 수리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 92119(기타 일반기계 수리업)



사 례	지도조치사항
▶ 우체국에서 체신예금 등 금융매출이 더 큰 경우 산업분류 및 매출액 조사방법은?	☞ 산업분류 : 64110(우편업) * 업종의 매출액 크기에 관계없이 우체국의 주업무인 우편업으로 분류 * 매출액 : 예산집행액+금융수입
▶ 일정한 사무실을 가지고 굴삭기 등 중장비 소유자를 관리하면서 업체가 공사 의뢰 시 단순히 업체와 중장비 소유자를 연결만 시켜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의 조사 방법은?	☞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만 종사자로 파악하여 조사 ☞ 산업분류 : 75942(텔레마케팅서비스업) 주) 이때, 사무실의 개설(운영) 주체는 중기업자가 아닌 제 3자임
▶ 교통범칙금을 대납하여 주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 66031(손해보험업) : 회원이 월 또는 연간 일정액을 불입하면 실제 범칙금액수에 관계없이 사업체에서 회원에게 부과된 교통범칙금 모두를 부담하는 경우
▶ 『스티커사진』 촬영업체의 산업분류는 ?	☞ 74911(인물사진 촬영업)으로 분류하되 일정한 사무실을 두고 상근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함
▶ 동네에서 벽지판매 · 붙이기, 커튼 제조 · 설치, 장판판매 · 깔기 등을 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는(업체명 : ○○○종합장식)?	☞ 장판판매 · 깔기 위주 : 52612(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 커튼제조 · 설치 위주 : 17913(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 벽지판매 · 붙이기 위주 : 46412(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목 공사업)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체의 산업 분류는?	☞ 50120(중고자동차 판매업)
▶ 이벤트 행사를 기획 및 대행 하는 경우?	☞ 75994(전시 및 행사 대행업)
▶ 경품게임장의 산업분류는?	☞ 88911(전자게임장 운영업)

9 종사자 수

사 례	지도조치사항
▶ 법인사업체의 사장, 대표이사, 중역(전무, 상무)을 자영업주로 조사하여도 무방한가?	☞ 법인사업체의 사장, 대표이사, 중역(전무, 상무)은 상용종사자로 조사
▶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사람은 어디에서 조사되어야 하는가?	☞ 파견한 종사자를 관리하는 회사(인력공급업체)에서 조사
▶ 야쿠르트, 우유, 화장품 외판원의 종사상 지위는?	☞ 판매액에 따라 실적급(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무급종사자에 포함 조사 ※ 무급종사자가 받는 임금도 인건비에 포함
▶ 보험업종에 종사하는 생활설계사의 종사상 지위는?	☞ (5) 무급종사자에 조사
▶ 정수기 외판원이 회사에 등록만 하고 드물게 정수기를 팔아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종사상 지위는?	☞ (5) 무급종사자로 조사
▶ 스포츠클럽의 회원, 사찰 등에서 장기거주 하는 자도 종사자수에 포함 조사하는가?	☞ 9 종사자수에 포함하지 않음
▶ 백화점에서 임대한 매장(임대갑, 을매장)의 종사자는 백화점 종사자수에 포함하는가?	☞ 임대매장은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백화점에 포함 조사하지 않음
▶ 사업체 종사자수 조사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① (3) 상용종사자수는 영업기간 중 월평균 근무인원수로 조사 ② (4) 임시 및 일용종사자는 일평균 근무 인원수로 조사
▶ 조직형태가 '개인사업체' 일 경우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는 종사상 지위는?	☞ (1) 자영업주



사 례	지도조치사항
▶ 조직형태가 회사법인, 회사이외의 법인, 비법인단체일 경우 조사되어서는 안 되는 종사상 지위는?	☞ (1) 자영업주 및 (2) 무급가족종사자
▶ 기본급 없이 수당만 받는 신문지국에 종사하는 배달원의 종사상 지위는?	☞ (5) 무급종사자
▶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정의 종사자수는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가?	☞ 노인정을 직접 관리하는 인원을 종사자로 조사 ※ 회원은 종사자가 아님에 유의
▶ “경남사회정책연구소”의 경우 연구원인 대학교수,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1명 및 출근을 하지 않은 연구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 경우 종사자는 어떻게 조사하여야 되는가?	☞ 대학교수, 아르바이트 학생은 종사자로 조사하여야 하며 출근을 하지 않은 연구회원들은 9 종사자수에서 제외
▶ 교회 목사의 종사자상 지위구분은?	☞ (3) 상용 종사자
▶ 「공익근무요원」을 종사자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 9 종사자수에서 제외함
▶ 공공근로요원은 종사자에 포함되는가?	☞ 9 종사자수에 포함됨. ※ 조업기간 중 월평균종사자로 파악하여 조사(연인원이 아님) ☞ 공공근로요원이 실제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조사(공공근로 요원을 채용한 사업체에서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 ☞ 종사상 지위 ※ 임금지불 기관(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4) 임시 및 일일종사자 ※ 임금지불 기관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5) 무급종사자
▶ 개인사업체의 자영업주가 2명 이상 나와도 되는가?	☞ 여러 명이 동업할 경우에는 나타날 수 있음.

10 / 14-1 / 14-2 ① 연간 총매출액

사 례	지도조치사항
<p>▶ 총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단위(백만원) 미만 사업체의 매출액 조사방법은?</p>	<p>☞ 연간 총매출액이 단위(백만원) 미만일 경우 1백만원으로 올림하여 조사함</p> <p>※ 미기장업체의 연간총매출액=실제 월평균매출액×조업월수 즉, 단위 미만의 월평균매출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한 후 단위는 반올림하여 기입(조사)해야 함.</p> <p>예 월평균 매출액 : 17만원, 조업월수 : 10개월인 사업체의 경우</p> <p>➔ ① 월평균매출액 조사표 기입시 : 1백만원(우측 여백에 17만원 기입)</p> <p>② 연간총매출액 계산시 : 17만원×10개월=170만원</p> <p>③ 연간매출액 조사표 기입시 : 2백만원</p>
<p>▶ 개인운수업체의 조사구번호 및 매출액은 어떻게 조사 하는가?</p>	<p>☞ 조사구번호 : 999-1</p> <p>☞ 매출액 : 해당조합 소속 개인운수업체의 평균매출액을 일괄 적용</p>



사 례	지도조치사항
▶ '2003년 12월에 창설하였는데, 계속 영업하다가 '05. 10. 5일 갑작스런 사업주의 입원으로 현재까지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 연간 영업한 개월 수는?	<p>☞ '05. 1. 1 ~ 12. 31일까지의 조사대상기간 중 실제로 영업한 9개월(1월에서 9월까지)로 조사</p> <p>※ 개월 수는 월당 15일을 기준으로 사사오입하여 조사</p>
▶ 선박을 제조하는 사업체의 매출액은 수주액으로 조사하여도 무방한가?	☞ 선박회사는 장기간에 걸쳐 선박을 제조하기 때문에 연간 선박 진척비율에 따라 매출액을 산정
▶ 결산월이 6월 또는 9월인 사업체의 매출액 조사방법은?	<p>☞ 최근 일년간의 결산자료에 의거 조사표의 매출액을 조사</p> <p>☞ 6월 법인인 경우 2004. 7. 1 ~ 2005. 6. 30(1년간)의 실적(매출액)을 조사</p>
▶ 2005년 10월에 신규 창설한 사업체의 매출액은 어떻게 조사하나?	☞ 2005년 10월, 11월, 12월의 3개월간 실적(매출액)을 조사
▶ 보건소의 매출액은 어떻게 조사하나?	<p>☞ 「 6 조직형태」의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인 사업체의 매출액은 2005년 예산 집행액 중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조사표 6의 「14-1」 사업실적의 경상경비지출액과 같아야 됨)</p>
▶ 경로당, 각종 협회 등 비영리 사업체의 매출액 조사방법은?	☞ 비영리사업체는 반드시 조사표6의 조사항목 「14-1」 사업실적」란의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 조합의 명부에 의해 조사하는 개인운수업체의 매출액은 어떻게 조사하는가?	☞ 해당 읍·면·동의 평균매출액을 일괄 적용(조사관리자가 조사표 작성)
▶ 계절사업체(스키장, 해수욕장 등)의 휴업기간은 연간 영업한 개월수에 포함하는지?	☞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영업한 개월수만 조사
▶ 학교 등 공공기관의 매출액 조사방법은?	☞ 산하기관 및 타 기관에 재배정된 예산액을 제외한 해당 기관이 직접 집행한 예산액만을 매출액으로 조사

14-1 / 14-2 사업실적

사 례	지도조치사항
▶ 무상으로 수집한 재활용품의 사업비용의 구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① 판매비와 관리비 ⇒ 직원인건비, 임차료 등 관련항목에 기입, 부수비용(운송비 등)은 기타 난에 기입
▶ 음식료품 중개업의 매출액에 포함되는 범위는?	☞ ② 원가성격의 부수비용(운송비 등)도 판매비와 관리비의 기타 난에 기입
▶ 수 명의 농민이 상추를 직접 생산하여 “상추직판장”에 위탁판매를 할 경우 “상추 직판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중개수수료만 기입(중개상품의 가격은 조사하지 않음)
▶ (“상추직판장”의 상시종사자수는 2명)	☞ ① 산업분류 ⇒ 위탁판매이므로 51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중고자동차판매 사업체가 자동차소유주와 수요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 매출액은?	☞ ② 매출액 ⇒ 수수료 총액
▶ 조명기구 소매가 주산업이지만 가정에 조명기구를 팔기 위해 소규모 조명기구 설치공사도 겸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설치공사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③ 판매비와 관리비 ⇒ 직판장으로 위탁물건을 수송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수송비 등)는 매출원가 성격이지만 판매비와 관리비의 기타 항목에 기입
▶ 금융업과 일반학교의 결산 회계연도 기준은?	☞ 수수료 총액
▶ 조명기구 소매가 주산업이지만 가정에 조명기구를 팔기 위해 소규모 조명기구 설치공사도 겸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설치공사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매출액에 포함하여 조사
▶ 금융업과 일반학교의 결산 회계연도 기준은?	☞ ① 투신, 보험, 종금업 : 4. 1. ~ 익년 3. 31.
▶ 금융업과 일반학교의 결산 회계연도 기준은?	☞ ② 증권업 : 4. 1. ~ 익년 3. 31.
▶ 금융업과 일반학교의 결산 회계연도 기준은?	☞ ③ 학교 : 3. 1. ~ 익년 2. 28.



사 례	지도조치사항
▶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체 중 ① 개인 사업체 또는 ② 비법인단체인 사업체의 연초상품재고액과 연말상품재고액의 조사 방법은?	☞ 비결산 사업체의 연초 및 연말 상품 재고액은 조사하지 않음 (이는 연초와 연말의 재고액이 같은 것으로 취급함)
▶ 폐차장의 경우 폐차를 구입하여 압축, 해체 등 제반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업 비용 조사 시 노무자들의 인건비가 원가로 분류되어 있을 때 비용부문의 인건비는 어떻게 조사되어야 하는가?	☞ 매출원가의 인건비성 경비이지만 판매비와 관리비의 인건비 항목에 합산하여 기입
▶ 무급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실적급 수당 등은 사업실적 중 어느 항목에 조사되어야 하는가?	☞ 급여총액
▶ 사업체내에 주거부분이 있으며 일괄하여 임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차료 조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조사
▶ 임대사업체의 경우 전세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경우?	☞ 임차료 '0' 비교란에 「전세」라고 기입
▶ 중고자동차 위탁판매 사업체의 매출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 위탁판매수수료
▶ 동일업종의 사업체가 조사대상 기간 (2005. 1. 1. ~ 12. 31.) 중에 상속자이외의 사람에게 승계된 경우 매출액 조사방법?	☞ 전 주인의 매출액 및 사업비용을 알 수 없으므로 승계 된 이후의 기간만 조사

11 정보기술 기반 및 활용

사 례	지도조치사항
▶ A회사는 전용회선을 사용하며 80대가 인터넷 접속가능한데 그중 10대를 보안 등의 관계로 접속을 못하게 막아놓은 경우의 인터넷 접속 PC대수는?	☞ 70대로 조사
▶ 학교, 학원 등의 강의용 컴퓨터도 전산장비 보유대수에 포함되는가?	☞ 학교나 학원의 실습 및 강의용 PC도 모두 포함하여 조사

12 사업장 건물면적

사 례	지도조치사항
▶ ○○슈퍼는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이 20평,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5평,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방, 주방 등 면적이 20평인 경우 건물연면적과 매장면적 조사방법은?	<p>☞ 매장면적은 20평, 건물연면적은 25평(매장 20평 + 창고 5평)으로 조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제외.</p> <p>※ 도소매업체의 건물연면적은 반드시 직영매장면적보다 크거나 같아야 됨</p>
▶ 골프장이나 낚시터는 사업체건물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 건물에 한하여 면적을 조사하므로 건물이 아닌 골프장이나 낚시터는 조사에서 제외(단, 실내골프연습장은 조사대상)
▶ 주유소의 매장면적 범위는 어떤 시설까지 포함 조사하는가?	<p>☞ 주유기가 설치된 장소 중 지붕의 밑면적</p> <p>※ 사무실 면적은 건물연면적에는 포함되나 매장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특히 주의</p>
▶ 물품창고와 사무실만 있는 도매업체의 경우 매장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 매장면적을 0으로 기입
▶ 주산업은 도매업이고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한 사업체가 사무실과 물품창고, 소매업을 위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장면적은?	☞ 소매업의 매장면적을 기입
▶ 지붕이 있는 공업사의 작업장 및 동물원의 사육장면적은 어떻게 조사하는가?	☞ 사업체건물연면적에 포함하여 조사
▶ 자동차 공업사의 내대지의 작업장은 사업체 건물연면적에 포함되는가?	☞ 포함하지 않음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건물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 사무실 및 관리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경비소 및 창고 등 포함)면적



사 례	지도조치사항
<p>▶ ○○제과 △△영업소는 본사 ○○제과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건물연면적의 소유형태는?</p>	<p>☞ 소유로 조사하고 '16 유형자산' 도 조사토록 함 ※ 이와 유사한 형태가 많으니 조사에 유의(지사·점 사업체에서 본사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소유로 조사하고 16 유형자산도 조사)</p>
<p>▶ ○○슈퍼는 상품을 저장하는 창고가 사업체와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창고도 건물연면적으로 조사해야 하나?</p>	<p>☞ 건물연면적은 영업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모두 조사해야 하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창고도 포함 조사해야 됨. ※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창고에 상주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체로 조사</p>
<p>▶ 고물수집상의 산재되어 있는 고물적재장의 면적은 어떻게 조사하여야 하는가?</p>	<p>☞ 사업장 면적은 건물면적만이 조사대상 이므로 건물면적은 합산하여 조사하고 건물이 아닌 면적은 조사에서 제외</p>
<p>▶ 분재판매가 묘목 밭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 묘목 밭을 매장면적으로 볼 수 있는가?</p>	<p>☞ 별도의 매장시설이 없다면 매장면적으로 볼 수 없음</p>

13-1 상품매입처별 구성비

사 례	지도조치사항
▶ 주요소에서 기름 등을 구입할 때 그것이 본지점간 이동인지 아니면 생산업자인지 도매업자인지 궁금합니다.	☞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정유소에서 오면 본지점간 이동, 다른 정유공장에서 오면 생산업자이며, 단지 도매업자에게 그것을 구입하여 되파는 경우에는 도매업자로서의 구입
▶ 체인점인데 상품 구입을 어디서 하여야 한다고 봐야 하나요?	☞ 체인점이 직영점이 아닐 경우에는 생산업자나 도매업자로부터의 매입이지만, 직영 체인점이 본사에서 직접 상품 구입한 경우에는 본지점간 이동
▶ 무역업자를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소위 오피상이라고 불리는 수입업자) 이 경우에는 해외수입인가요?	☞ 아님. 우리는 직접 통관절차를 거쳐서 수입할 경우만 해외 수입으로 간주. 이런 경우에는 도매업자로부터의 구입
▶ 이 항목의 조사가 어려운데 어떤 방식을 따르면 될까요?	☞ 지사점이 아닌 이상 본지점간 이동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지사점이 아닌데 이 쪽에 금액이 잡혔으면 잘못된 것임. 또 자영업자, 본지점간 이동, 사업체 구분을 잘 참조하여 작성

13-2 상품판매처별 구성비

사 례	지도조치사항
▶ 기타산업사용자의 개념이 어려운데요?	☞ 기타산업사용자는 그 물건을 최종 소비하지 않고 다른 산업을 이용하여 가공하여 산업을 영위하는 자임.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고기 등을 받아 가공을 한다든가, 판촉물을 사서 거기에 인쇄나 광고문을 써서 다른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을 말함
▶ 고물상들이나 재활용 센터점 업체들은 고철 등을 재활용하는 공장에 납품 하는 데요?	☞ 가장 대표적인 생산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 상품판매처가 도매업, 소매업을 같이 경영하거든요?	☞ 그럴 때는 매출액의 크기 순으로 판단



13-2 객실(석)수

사 례	지도조치사항
<p>▶ 음식점의 경우 성수기에 옥외나 기타 다른 장소에 좌석을 늘려 영업을 할 경우 객석수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p>	<p>☞ 영업기간 중 상시 고정 설치된 좌석수를 조사</p>
<p>▶ 음식점의 방안에 좌석은 없고 식탁만 있는 경우 식탁도 좌석수로 조사해야 하나?</p>	<p>☞ 식탁이 몇 인용인지 확인하여 좌석수로 조사 예 4인용 식탁 10개만 있는 음식점의 좌석수는 40개로 조사</p>

13-3 체인점 가입여부

사 례	지도조치사항
<p>▶ 체인점 가입여부가 너무 어렵습니다. 체인점의 구분이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p>	<p>☞ 체인점의 형태는 수시로 변화하기도 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체인점 성격을 혼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지침서를 통하여 프랜차이즈 체인과 볼런터리의 구분 방법을 숙지하고 그에 따를 것. 레귤러 체인(직영점)은 지사점에 해당함</p>
<p>▶ 처음에는 프랜차이즈였는데,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고 형태와 실질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맞추어야 할까요?</p>	<p>☞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 실질에 맞는 정보를 얻어 와야 하고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그 실질에 합당한 체인점 여부를 조사.</p>
<p>▶ 체인점 가입여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냥 가지고 와서 일괄 정리하여도 상관 없나요?</p>	<p>☞ 음식점이나 소매업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체인점 가입여부를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그 여부를 표시</p>

13-1 교육시설(80 교육서비스업)

사 례	지도조치사항
▶ 온라인 강의와 같이 물리적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강의실 개수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온라인 강의는 우리의 조사대상이 아님
▶ 재적학생수 같은 경우 단과대학생과 종합반 학생을 어떻게 구별해서 봐야 하나요?	☞ 1인을 한명으로 간주. 한명이 여러 강의를 들으면 그 역시 한명씩으로 조사.
▶ 시간강사의 경우 교원으로 잡아야하지 않나요?	☞ 교육시설에서는 강사 수로 잡지 않음. 그러나, 분명 산업활동을 하는 인력이므로 종사자수로는 기입
▶ 시간강사를 제외하면 학원 같은 경우 교원이 한 명은 안 나오는 경우도 매우 많은데요?	☞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도 지침대로 조사
▶ 가정방문 교육 같은 경우 재적학생수는 조사해야 되는지?	☞ 재적학생수로 조사하지 않음.

13-1 연구·기술직 종사자 현황

사 례	지도조치사항
▶ 연구직 기술직의 구분이 너무 모호합니다. 자격증이 없더라도 기술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 상식에 기초하지 말고 지침에 맞게 조사를 수행기준이라는 것은 어느 선으로 정하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음. 그러므로 약속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기술직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의 공인자격증을 가진 자로 분류하고 있으니 지침에 따라 작성
▶ 사진기사라든지 미용기사 같은 경우는 기술자 아닌가요?	☞ 우리는 통신업과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에서만 연구 기술직 종사자 현황을 조사 따라서, 업종과 관계없는 것은 미조사
▶ 직접적 업무는 하지 않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 직접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이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연구·기술직 종사자 현황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 유무는 상관없음.
▶ 졸업이 얼마 안남은 졸업예정자인데요?	☞ 조사 당시 기준일에 학위취득이 완료되어야 함



13-2 병·의원 입원시설(8511 ~ 8512 병·의원)

사 례	지도조치사항
▶ 동물 병원 같은 경우의 입원시설은 어떻게 하나요?	☞ 우리는 사람을 취급하는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병·의원 입원 시설 등만 조사
▶ 병상도 어떤 것은 침대로 되어 있으나 어디는 온돌방으로 되어있던 곳도 있던데요?	☞ 그런 경우에는 침상수와 입원 가능 수용인원 수를 기준으로 조사
▶ 응급실에 있는 병상도 병상수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 응급실에 있는 병상은 입원을 위한 시설은 아님. 그러나 병상 수에는 포함 조사

13-3 사회복지수용시설(86 사회복지사업)

사 례	지도조치사항
▶ 방에 부엌이나 침대가 딸려 있는데요. 이런 곳의 방수는 어떻게 조사합니까?	☞ 하나로 조사. 방에 있는 부속시설은 조사 단위와 관계없음
▶ 사회복지 수용시설 관리자를 위한 방수는 어떻게 합니까?	☞ 그 방을 사용하는 주된 사람이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방수로 조사
▶ 만약 야외에 수용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취급하지요?	☞ 고정된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외

13-2 경기·오락시설(883 경기·오락 및 889 기타오락관련산업)

사 례	지도조치사항
▶ 골프장 잔디에 그냥 홀만 가진 경우도 홀수에 포함되니까?	☞ 안됨. 어느 정도 거리에서 게임(경기)을 즐길 수준의 거리에 있는 홀수만 기입
▶ 스키장 규격이나 수영장 레인 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 각 기준은 체육시설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어느 정도가 볼링장이나 당구장의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 누구나 그 곳을 상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함. 자세한 기준이 없는 곳은 오히려 조사원의 상식적 판단이 더 맞는 기준
▶ 기원이나 컴퓨터게임장에서 주인이나 종업원이 사용하기 위한 것도 썩니까?	☞ 아님.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비만을 기입

15 자본금 또는 출자금

사 례	지도조치사항
▶ ○○전자 △△지점 사업체인데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조사해야 하나?	☞ 15 자본금 또는 출자금은 「6 조직형태」의 ② 회사법인」 중 「7 사업체 구분」이 ① 단독사업체」 또는 ② 본사(점) 인 사업체만 조사하므로 △△지점은 조사하지 않음



16 유형자산

사 례	지도조치사항
▶ ○○식당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건물도 유형자산으로 조사해야 하나?	<p>☞ 유형자산 조사는 소유개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한 건물은 조사에서 제외</p> <p>※ 사업장 건물면적의 '① 소유'로 조사된 경우만 조사</p>
▶ 배달을 주로 하고 있는 중국음식점, 다방 등 사업체의 오토바이도 유형자산으로 조사해야 하나?	<p>☞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④ 차량·운반구'에 포함 조사(임차한 경우는 제외)</p> <p>※ '④ 차량·운반구'가 주로 조사되는 사업체 : 중국음식점, 다방, 피자 전문점, 치킨 전문점, 야식 배달 전문 음식점 등</p>
▶ 유(무)형자산에서 자산이 백만원 미만인 경우 처리방법은?	<p>☞ 단위미만은 사사오입(50만원 미만은 '0', 50~100만원 미만은 '1'로 조사)</p>
▶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체인데 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도 유형자산에 포함되나?	<p>☞ 영업활동(임대업)을 목적으로 취득했으므로 유형자산의 토지로 조사해야 됨</p> <p>※ 단, 지가상승의 차익 실현을 위하여 취득한 투기목적 토지는 직접적인 영업활동과는 상관없으므로 유형자산에서 제외</p> <p>※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는 상품으로 조사하지 않음</p>

17 무형자산

사 례	지도조치사항
▶ 무형자산의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적은 사업체에서는 소모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때 조사방법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비가 50만원 이상일 때만 조사하고 결산업체인 경우 자산으로 처리된 소프트웨어를 조사
▶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비결산 사업체도 무형자산을 조사해야 하나?	☞ 비결산 사업체도 무형자산이 있으면 조사 ※ 특히 소프트웨어 구입비(5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결산서 상에 산업재산권의 연말 잔액이 '0'으로 기입된 경우도 조사해야 하나?	☞ 무형자산 연말잔액을 '0'으로 조사
▶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 '경상개발비'와 무형자산에 포함된 '개발비'의 구분 방법은?	☞ 개발비 중 아래의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조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경상개발비'로 조사 * 무형자산 판단기준(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됨) ① 신제품 또는 신기술과 관련이 있어야 됨 ② 개발활동과 관련되어야 됨 ③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됨 ④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확실하게 기대되어야 함



18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사 례	지도조치사항
<p>▶ 조사 사업체에서 직접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고 타 사업체에 기술연구개발을 의뢰한 경우에도 조사해야 하나?</p>	<p>☞ 타 사업체에 연구개발을 의뢰한 금액도 조사에 포함</p>
<p>▶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도 기술연구개발비로 조사해야 하나?</p>	<p>☞ 포함 조사(연구 활동과 그 보조 활동의 종사자에게 지급된 급여, 복리후생비 등 각종 인건비를 포함하여 조사)</p>
<p>▶ 기술연구 개발비에 포함되는 범위는?</p>	<p>☞ 연구, 개발활동 수행과 관련이 있는 기계장치 및 토지·건물 취득비, 인건비, 재료비 및 기타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조사</p> <p>※ 기계장치 및 토지·건물 취득비란? ⇒ 연구기기, 기계장치 등의 시설구입 및 설치비와 연구소 건설비 등 연구 활동용 고정자산의 연간 신규투자액을 말함</p> <p>※ 재료비 및 기타 경비란? ⇒ 연구 활동 수행에 사용한 원료, 시료 등 비내구성 소모자재 비용, 건물 임차료, 컴퓨터 서비스료, 여비 및 우편통신비, 기타 연구실 운영비 등을 말함</p>
<p>▶ 기술연구 개발비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는?</p>	<p>☞ 기술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경우</p> <p>① 연구소, 연구부서에서 실시하는 활동 : 연구에 직접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 실험, 검사, 분석, 기계·장비의 구입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p> <p>② 연구소, 연구 이외에서 실시하는 활동 : 생산현장인 공장 등에서 시작품(試作品) 설계·제작 및 이에 따른 시험활동</p> <p>③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활동 : 연구개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서무, 회계 등의 지원활동</p> <p>☞ 기술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않는 경우</p> <p>① 연구소와 공장 등의 생산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생산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생산 공정의 일상적 점검, 품질관리에 관한 활동 및 제품·반제품·생산물 및 토양·대기 등의 검사, 시험, 측정, 분석 업무 등</p> <p>② 연구원이 아닌 일반직원의 연수훈련</p> <p>③ 일반적인 지형도의 작성, 지하자원을 찾기 위한 탐사활동 및 지질조사, 해양조사, 천체관측 등의 일반적인 자료수집 등</p>

CHAPTER

V



조사표 내용검토요령

- 완료된 조사표는 내용검토를 철저히 하여 착오기입, 항목누락, 관련항목 간 계수 불일치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결산사업체의 경우 결산서 상의 각 항목을 조사표 항목과 연결하여 조사표 검토
- 출력조사표 분실 및 산업분류 변동으로 조사표를 재작성 할 경우 정확하게 이기하였는지 검토
- 인터넷조사업체 조사여부 확인 및 기본사항과 「인터넷조사」라고 기입한 다음 해당 조사구에 조사표를 삽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본사조사사업체로서 조사가 완료된 본사조사표는 정확히 시·군·구별로 편철이 되었는지? 또한, 미조사된 본사는 미조사명부와 현황표 작성 여부를 확인

1. 조사대상 여부 확인

- 조사된 사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 조사대상 사업체 : 아래의 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사업체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 『A. 농업, 수렵업 및 임업』 및 『B. 어업』에 분류되는 사업체 중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 분류되는 사업체 중 군사시설(군부대, 중대본부 등)
- 『O. 교육 서비스업』 중 군사학교(사관학교, 3사관학교 등)
-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군병원(국군통합병원 등)
- 『S. 가사서비스업』(개인 가정집에 고용된 가정부, 교사 등)
- 『T. 국제기관 및 외국기관』(대사관, 영사관, UN기관 등)
- 고정설비가 없는 행상, 이동차량 판매업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52820 노점 및 유사이동판매업, 52899 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55223 이동음식점업)

2. 조사표 종류 확인

- 사업체의 해당 산업과 조사표 종류가 올바르게 선택되어 기입되었는지 확인
 - 조사표 종류 및 해당 산업분류(「산업분류별 사용 조사표종류 및 조사항목 구분」 참조)



- 조사표1 : 산업대분류 A~F, I, N에 해당되는 사업체
- 조사표2 : 산업대분류 G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되는 사업체
- 조사표3 : 산업대분류 H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되는 사업체
- 조사표4 : 산업대분류 K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되는 사업체
- 조사표5 : 산업대분류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체
- 조사표6 : 산업대분류 J, L, M, Q, R에 해당되는 사업체
- 조사표7 : 본사(6) 조직형태 ② 회사법인 또는 ③ 회사이외법인이면서 7 사업체
구분이 ② 본사(점)인 사업체)

■ 산업분류별 사용 조사표 종류 및 조사항목 구분

산업분류 항목	산업분류 부호	조사표종류	작성항목	조사제의 항목
A 농업 및 임업	01110 ~ 02030	조사표1	1 ~ 10항까지	
B 어업	05111 ~ 05220			
C 광업	10111 ~ 12290			
D 제조업	15111 ~ 37200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110 ~ 41020			
F 건설업	45110 ~ 46500			
G 도·소매업	50110 ~ 52899	조사표2	1 ~ 17항까지	
H 숙박 및 음식점업	55111 ~ 55242	조사표3	1 ~ 17항까지	
I 운수업	60100 ~ 63999	조사표1	1 ~ 10항까지	
J 통신업	64110 ~ 64299	조사표6	1 ~ 18항까지	-
K 금융 및 보험업	65110 ~ 67209	조사표4	1 ~ 17항까지	-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70111 ~ 71309	조사표6	1 ~ 12, 14 ~ 17항까지	13-1, 13-2 항
M 사업서비스업	72100 ~ 75999	"	1 ~ 18항까지	-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6111 ~ 76500	조사표1	1 ~ 10항까지	-
O 교육 서비스업	80110 ~ 80999	조사표5	1 ~ 17항까지	13-2, 13-3 항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111 ~ 86299	"	"	13-1 항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87111 ~ 88999	조사표6	1 ~ 18항까지	13-1 항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0110 ~ 93999	"	1 ~ 17항까지	13-1, 13-2 항

3. 업종별 (조사표 1은 10항) 14항 사업실적 구분 확인

- 업종별로 작성할 조사표 및 「14항 사업실적」조사 항목이 다르므로 해당 조사표에 사업실적을 정확히 조사

	14-1 항(10 항)	14-2 항
조사표 1	A ~ F(01 ~ 46), I(60 ~ 63), N(76) (연간 매출액만)	무
조사표 2	G 도매 및 소매업 6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체 또는 ⑤ 비법인 사업체	G 도매 및 소매업 6 조직형태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조사표 3	H 숙박 및 음식점업 6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체 또는 ⑤ 비법인 사업체	H 숙박 및 음식점업 6 조직형태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조사표 4	K 금융 및 보험업 6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체 또는 ⑤ 비법인 사업체	K 금융 및 보험업 6 조직형태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조사표 5	대분류 O, P 6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체 또는 ⑤ 비법인 사업체	대분류 O, P 6 조직형태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조사표 6	대분류 J, L, M, Q, R 6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체 또는 ⑤ 비법인 사업체	대분류 J, L, M, Q, R 6 조직형태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조사표 7	해당사항 없음	본사조사표(10항) ② 회사법인 또는 ③ 회사이외법인의 본사



4. 조사항목별 검토요령

난 외 사 항

행정구역분류부호(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사업체일련번호 등이 조사표마다 정확히 기입되었는지를 확인

● 행정구역분류부호

- 해당 읍·면·동 행정구역의 변동(분동, 합동)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
- 해당 읍·면·동의 행정구역분류부호(7자리)는 2005. 12. 31. 현재 기준으로 올바르게 부여되었는지 확인

● 조사구 번호

- 조사구역도 및 사업체명부의 조사구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
- 집단조사구 특성부호 확인

● 사업체 일련번호

- 조사구역도 및 사업체명부의 사업체일련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
- 조사표 종류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체 일련번호 우측 여백에 “조사표 변경”(적색)이 기입되었는지 확인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의 공동 조사항목

■ 1 사업체명

- 1 사업체명이 누락된 조사표는 없는지 확인하여 보완
(상호명이 없는 사업체는 대표자 또는 취급상품명을 기입)
- 7 사업체 구분 항목의 『3 지사(점), 영업소, 공장 등』에 표시된 경우에는 지사(점), 영업소, 공장명이 제대로 기입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사업체명에 있는 (주), (유), (합자), (합명)이 사업체명 뒤에 기입되었는지 확인
 - ☞ 쌍용화재(주) (○)
 - (주)신세계백화점(×) → 신세계백화점(주)로 수정하여야 함
- 응답자
 - 조사표 내용을 주로 답변한 응답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가 정확히 기입되었는지 확인
- 11 정보기술 기반 및 활용 항목의 (3)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여부에 『1 개설』로 표시된 경우 인터넷주소가 누락되었는지 확인

2 대표자명

- 사업체가 본사, 본점, 본부, 중앙회인 경우 본사의 대표자명이 올바르게 기입되었는지를 확인
- 사업체가 지점, 공장, 영업소인 경우 본사의 대표자명이 아닌 지점장, 공장장, 영업소장의 이름이 올바르게 기입되었는지 확인
 - ☞ 롯데리아(주) 대전역지점의 대표자명을 기입할 경우
롯데리아본점의 대표자 이름(×)
롯데리아 대전역지점의 점장 이름(○)
- 대표자의 성별구분이 ① 남 또는 ② 여 한 곳에 '✓' 표시 되었는지 확인

4 소재지

-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법정 동, 리 명 및 번지, 통, 반이 빠짐없이 기입되었는지 확인
- 빌딩, 시장, 상가명과 층, 호수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입된 경우 조사구 특성번호가 「2」, 「3」, 「4」인가를 확인

5 사업장 변동

- '✓' 표시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① 사업장 존속 ~ ④ 사업장 철거 및 폐쇄 중 반드시 해당되는 번호 하나에 '✓' 표를 하여야 함
- 「② 사업장 신설 및 누락」에 '✓' 표시된 사업체의 창설년월 기입 누락 확인
- 창설년월은 해당 업종을 처음 개설한 연월로 정확하게 기입하였는지 확인
 - ⑥ 조직형태가 「① 개인사업체」는 처음 영업을 시작한 연도를 기입
 - ⑥ 조직형태가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 법인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⑤ 비법인 단체」는 법적 창설 년월을 기입
- 2006년 창설업체의 경우 창설년월과 ⑩ 영업개월수와 ⑭ 사업실적을 비교 확인
 - 예 2006년 10월 창설업체의 조업월수가 4개월 이상인 경우는 오류

5 조직형태

- 해당하는 번호 한 곳에만 기입되었는지 확인
- ① 개인사업체의 경우는 ⑨ 항의 (1)자영업주 수가 1명 이상인지 확인



- ② 회사법인, ③회사이외 법인, ④국가, 지방자치단체 ⑤비법인단체의 경우는 9 항의 (1) 자영업주 또는 (2) 무급가족종사자에 숫자가 없어야 함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비영리기관(14 사업실적)으로 조사된 경우 재확인

7 사업체 구분

- 해당하는 번호 한곳에만 기입이 되었는지 확인
- 대리점계약(혹은 특약점)을 맺고 독립적으로 개인이 경영하는 경우 ①. 단독사업체가 아닌 다른 번호로 잘못 표시되었는지 확인
 - ☞ LG전자(주) 둔산대리점(대리점계약)의 경우
 - ② 회사법인에 표시(×) → ① 단독사업체에 표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지청, (지방)사무소, 출장소 등이 『① 단독사업체』로 제대로 기입되었는지 확인
- 사업체구분이 『③ 지사(점), 영업소, 영업소 등』이면서 6 항 조직형태가 ② 회사법인인 사업체의 본사(기업체)명 및 소재지가 기입되었는지 확인

8 사업의 종류

(1) 사업내용

-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입되었는지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산업세세분류 단계까지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입하여야 함
 - ☞ 음료수 도소매 100%(×) → 음료수 도매 또는 음료수 소매로 정확히 구분하여 기입
- 겸업인 경우 사업내용이 구체적 분리하여 기입하였는지 확인
 - ☞ 음료수 도소매 100%(×) → (1) 음료수 도매 ○ ○ %
(2) 음료수 소매 △ △ %로 분리하여 기입
 - ☞ 가정용 전자제품 판매 및 수리 100%(×)
 - (1)가정용 전자제품 소매 ○ ○ %
(2) 가정용 전자제품 수리 △ △%로 분리하여 기입

(2) 비중(%)

- 겸업인 경우 매출액 비중이 높은 업종이 첫째 칸에 기입되었는지 확인
- 사업의 종류 순위가 매출액 비중순위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 비중의 합이 100보다 크지는 않는지 확인
 - 비중의 합 ≤ 100

(3) 주요취급품목 및 영업종목

- 누락 및 구체적으로 기입하였는지 확인
 - ☞ 의류 등 (×) → 유아용 외의, 유아용 내의, 정장 등과 같이 구분하여 기입

(4) 산업분류

- 사업내용 및 취급품목(영업종목)에 따라 산업분류를 올바르게 분류하여 기입하였는지 확인
 - 출력조사표에 입력된 산업분류를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상이할 경우 사업체에 확인하여 수정
 - 산업을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총관리자,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결정
- 산업분류부호가 01*** ~ 05***(농·림·어업)인 사업체의 6 조직형태가 1 개인 사업체인 경우는 착오임

9 종사자수

- 6 조직형태가 『1 개인사업체』인 경우 자영업주가 1명 이상인지 확인하고 0인 경우는 사업체에 확인
-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 3 회사이외법인, 4 국가·지방자치단체 5 비법인단체』인 경우 자영업주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수는 0 임
- 임시 및 일일 종사자수의 누락 및 연인원으로 조사된 경우는 착오이므로 조사지침에 따라 재 조사해야하며, 또한 조업기간 중 평균 종사자수로 환산하여 기입되었는지 확인
 -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현장의 임시 및 일일종사자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1) 자영업주 + (2) 무급가족종사자 + (3) 상용종사자 + (4) 임시 및 일일 종사자 + (5) 무급 종사자 = (6) 합계가 맞는지 확인
- ① 남 + ② 여 = ③ 계가 맞는지 확인

서비스업 총조사 공통 조사항목

10 영업기간

(1) 연간 영업 개월수

- 2005. 1. 1. ~ 12. 31. 기간 중 실제로 영업활동을 수행한 개월 수



☞ 영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하여도 1개월로 기입(예) 12일 영업 → 1개월

(2) 월 평균 휴무일수

- 2005. 1. 1. ~ 12. 31. 기간 중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업체의 정상 휴무일수를 월 평균으로 기입
 - ☞ 1시간이라도 영업을 한 날은 근무일수에 포함
- 국경일, 명절, 경조사, 창립기념일 등으로 인한 부정기적인 휴무일은 제외

11 정보기술 기반 및 활용

- 『(2) PC < 인터넷접속 PC대수』이면 반드시 확인
 - (2) PC ≥ 인터넷접속 PC대수
- (3)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유무가 『① 개설』인 경우 1항 사업체명의 인터넷주소가 누락 되지 않았는지 확인

12 사업장 건물면적

- 단위는 평(坪)으로 조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단위 환산시 1평 = 3.3m²(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를 적용
- 건물연면적이 아닌 건물밀면적으로 잘못 조사되지는 않았는지 확인
- 『사업장 건물면적 = 0』이면 반드시 확인
- 도·소매업(산업분류 50***, 51***, 52***)인데 매장면적이 조사되지 않았으면 확인
- 『사업장 건물면적 < 매장면적』이면 재조사
 - 매장면적이 사업장 건물면적보다 크면 착오임.
- 소매업(산업분류 52***)인데 매장면적이 0이면 반드시 확인
 - 단, 무점포소매업(산업분류 528**)은 제외

14 사업실적

- 항목별 합계가 맞는지, 사업실적 관련 각 항목이 누락 없이 기입되었는지를 확인
 - 결산 사업체인 경우 결산서의 각 항목이 조사표상의 항목에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 영업이익이 적자 또는 과다 계상된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
 -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중복 기입하지 않았는지

- 기타비용에 해당되는 결산서상의 계정과목을 누락시키지 않았는지
- 영업비용 또는 영업수익이 본사(지사)분을 포함하여 조사하지 않았는지

◎ 매출원가【조사표2, 14-2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 항목들이 맞게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

구 분	① 연초상품재고액	② 연중상품매입액	③ 연말상품재고액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	○	○
① 개인사업체, ⑤비법인단체	×	○	○

- 도·소매업이고 2005년 창설된 사업체가 『① 연초상품재고액』이 있는지 확인
→ 『① 연초상품재고액 > 0』이면 착오임
 - 14-2 항에 해당되는 사업체인 경우 『③ 연말상품재고액 = 0』이면 사업체에 확인(상품증개업, 전자상거래업의 경우는 ① 연초상품재고액, ③ 연말상품재고액이 0인 경우도 있음)
 - ㉗ 매출원가 = 『① 연초상품재고액 + ② 연중상품매입액 - ③ 연말상품재고액』이 맞는지 확인
 - 비결산 사업체인 경우 『㉗ 매출원가 = ② 연중상품매입액』이 맞는지 확인
-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각 항목별로 경비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조사된 경우 경비누락이나 중복여부를 확인
- ㉠ 급여총액과 9 종사자수를 비교하여 검토
- ◎ 『9 종사자수의 (3) 상용종사자 또는 (4) 임시 및 일일종사자』가 1명 이상이면서 인건비가 0이면 재조사를 하여 보완
- ◎ 『9 종사자수의 (5) 무급종사자』가 1명 이상인 경우 무급종사자에게 고용주가 지급한 수당이나 수수료가 인건비에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12 사업장 건물면적. ②임차 > 0』이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4-1 항 ㉠/ 14-2 항 ㉠ 임차료』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

16, 17 유·무형자산

- ◎ 결산사업체는 장부가액으로 정확히 조사되었는지 확인



18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대차대조표」상의 기술연구개발비와 관련한 토지 및 설비취득액과 「손익계산서」상의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가 누락없이 조사되었는지 확인

업종별 특성 조사항목

13-1 상품매입처별 구성비(50 ~ 52 도·소매업)

- 상품매입처별 구성비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함

13-2 상품판매처별 구성비(50 ~ 52 도·소매업)

- 상품판매처별 구성비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함

13-1 객실(석)수(55. 숙박 및 음식점업만 해당)

- 『숙박업(산업분류 551**)인데 객실수 = 0』이면 반드시 확인
 - 숙박업(산업분류 551**)은 반드시 객실수가 1이상임
- 『음식점업(산업분류 552**)인데 객석수 = 0』이면 반드시 확인
 - 음식점업(산업분류 552**)은 반드시 객석수가 1이상임
- 『호텔업(산업분류 55111)인데 객석수 = 0』이면 확인
 - 호텔의 편의시설 중 식당, 다방 등이 존재할 경우 객석수는 반드시 조사되어야 됨.
 - ☞ 객실수 : 주인이나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
 - ☞ 객석수 : 접객용으로 옥외에 설치한 식탁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음식점업(552)	호텔업(55111)	호텔이외의숙박업(551)	음식점업을 겸하는 숙박업
1. 객실수	×	○	○	○
2. 객석수	○	○	×	×

13-3 / 13-2 체인점 가입여부(52 소매업, 552 음식점업)

- 프랜차이즈나 볼런터리 체인만 해당하지 레귤러체인(직영점)은 체인점 가입여부에 체크하면 안됨

- ◎ 체인점 가입여부에 표시되면 반드시 6 조직형태는 “① 개인사업체”이며, 7 사업체 구분은 단독 사업체가 되며 종사자수에 “자영업주” 포함

13-4 매장면적(소매업)

- ◎ 직영매장면적에 특정매입매장이 포함됨
- ◎ 직영매장면적 ≤ 12.사업장 건물면적이어야 함

기업체 단위 조사항목

15 자본금 또는 출자금

- ◎ 6 조직형태가 ② 회사법인인면서 7 사업체 구분의 ② 본사(점)에 표시된 사업체가 15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누락된 경우는 없는지 확인(자본금 또는 출자금 > 0)
- ◎ 자본금 또는 출자금 ≥ 외국인 출자 자본금

16 유형자산

- ◎ ① 토지와 ⑥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이 나올 수 없음
- ◎ (1) 연초잔액 + (2) 연중증가액 - (3) 연중감소액 - (4) 감가상각비 = (5) 연말잔액
- ◎ 각 유형자산의 합계는 맞아야 하며 합계도 위의 공식을 만족시켜야 함

17 무형자산

- ◎ (1) 연초잔액 + (2) 연중증가액 - (3) 연중감소액 - (4) 감가상각비 = (5) 연말잔액
- ◎ 각 무형자산의 합계는 맞아야 하며 합계도 위의 공식을 만족시켜야 함

18 / 11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조사표 5/본사조사표)

- ◎ 기술연구개발비와 기술도입비의 합계는 일치하여야 함

9 결산마감월(본사조사표)

- ◎ 결산마감월은 회계연도 작성 기준이 되며 대상기간의 마지막 월을 기입



16 본사관할 사업체 현황(본사조사표)

- 본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내 소재 사업체수를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공장, 연구소 및 보조 활동 범위가 빠지지 않게 기입하고 주어진 칸을 넘을 시에는 추가 용지를 사용하든지 엑셀 파일로 받아 올 것

본사조사 요령

조사 및 처리요령

- 본사조사는 2006. 4. 10. ~ 4. 29.기간에 담당 조사원이 조사
 - 조사기간에 담당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 1표~6표 중 해당 조사표를 작성하고 본사인 경우 추가적으로 본사조사표를 작성
- 그러나, 미결산 등의 사유로 본조사 기간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본사(조사표 7표)가 있는 시·군·구는 이를 마무리하기가 곤란
- 따라서, 본사조사 대상이 있는 시·군·구는 본사조사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
 - 조사된 본사조사표는 2006. 5. 9. ~ 6. 2.기간에 내용검토를 완료 후 별도 편철하여 6. 5. ~ 6. 9.까지 다른 조사표류와 함께 지방통계청(사무소)으로 제출
 - 미 조사된 본사는 해당 명부와 현황표를 작성하여 2006. 5. 10.까지 지방통계청(사무소)에 즉시 통보
- 단, 본사라 하여도 해당 업종별 조사표(1 ~ 6표 중)는 반드시 작성
- 시·군·구로부터 미조사 본사명부와 현황표를 제출받은 지방통계청(사무소)는 본사조사원을 채용하여 미 조사된 본사조사(본사조사표 7표 작성)를 실시하고 내검 및 정리하여 재 편철 후 다른 조사표류와 함께 제출일정에 따라 통계청(본부)으로 제출

부록

별첨 10종 요주

10종 별첨 요주

별첨 10종 요주 10종 별첨 요주

별첨 10종 요주 10종 별첨 요주

별첨 10종 요주 10종 별첨 요주



- 1. 주요 용어 해설
- 2. 세금과 공과

1. 주요 용어 해설

가. 조사 관련 용어

- **사업체** : 영리·비영리 또는 적법·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 하에 재화의 생산·판매, 서비스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를 말함
- **기업체** : ①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법적 또는 경영단위로서 ② 수입, 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와 기타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단위를 말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의)
- **비영리기관(비영리기관 중 비시장가격생산자)** : 구성원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체(구성원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음) 중 ② 재화 또는 서비스를 비 시장가격(무료 또는 이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체를 말함
 - 법적 성격
 - 비영리사업체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적 또는 사회적 실체로서 이를 설립, 지배, 자금을 지원하는 자에게 소득, 이윤, 기타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 경제적 성격
 - ①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따라서 영업잉여의 개념이 없는 사업체로서 수익과 비용의 불균형이 심함
 - ②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비시장가격(원가이하)으로 제공
 - ③ 이들 사업체의 운용은 개인, 회원, 기업, 정부 등으로부터 후원금, 회비, 지원금, 세금 등으로 운용됨
- **산업분류** :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들이 수행하는 각종 산업활동을 일정한 분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할하여 유사한 성질(동질성)을 갖는 산업활동 별로 유형화(분류)한 것으로서 산업활동의 유형을 구분한 것



- **출력조사표** : 조사구역도 및 사업체명부작성이 완료(2006. 2.10.)된 결과를 기초로 사업체명, 대표자명, 조직형태, 창설년월, 사업의 종류(사업내용, 주요 취급품목 및 영업종목, 산업분류)등 기본정보를 출력하여 제공하는 조사표
- **조사구 설정** : 전국의 행정 읍·면·동을 기본단위로 하여 준 항구적인 도로, 하천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50개±20개 내외의 조사대상 사업체가 포함되도록 지역을 분할하는 작업
- **기본도** : 전산 입력된 수치지도를 읍·면·동별로 접합하고 그 위에 2004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시 설정한 조사구 경계선을 입력하여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 조사구 설정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편집·제작한 읍·면·동 단위의 지도
- **조사구 요도** : 현지 조사에 편리하도록 조사구별로 조사구 경계, 주요 지형지물, 사업체 위치, 사업체일련번호 등이 표시된 약식 지도

나. 조사표 일반 용어

7 사업체 명

- 인터넷주소(URL):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5 자본금 또는 출자금

- 자본금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상법 §451)

14-1 / 14-2 사업실적

- **매출액** : 사업체의 주된 수입원을 매출이라 함. 즉,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나 외부에서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매출이 발생 즉,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실현된 금액
 - ※ 매출액 = 매출총액 - 매출에누리 - 매출환입 - 매출할인
- **매출 에누리** : 매출한 상품이 변질되었거나 혹은 파손의 상태가 경미하여 상품의 가격을 내려주는 경우를 뜻함
- **매출환입** : 매출한 상품이 변질되었거나 혹은 파손의 상태가 심하여 반품되어 오는 경우를 뜻함

- ◎ 매출할인 : 매출대금을 현금할인기간 내에 회수하는 경우 판매가격에서 일정률을 할인하여 주는 것
- ◎ 매출원가 : 매출액과 직접 대응되는 원가
 - ※ 계산식 = 연초상품재고액 + 연중상품매입액(총매입액 - 매입에누리 - 매입환출 - 매입할인) - 연말상품재고액
- ◎ 판매비와 관리비 :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사업체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
- ◎ 급 여 : 임원급여, 급료, 임금, 제 수당 등
- ◎ 퇴직급여 : 영업기간 중 또는 영업연도의 말에 임원 또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 자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 ◎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 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해 놓은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으로 전입된 금액
- ◎ 복리 후생비 :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 성격의 금액
- ◎ 임차료 : 부동산이나 동산을 임차하고 그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의 사용에 의한 소모, 시간의 경과, 진부화 등의 원인에 의해 감모된 경제적 가치, 무형자산의 사용에 의한 소모는 무형자산상각비라는 용어를 사용함. 우리 조사표 상에서는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 ※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등(일반적으로 정액법의 방법을 사용하며, 세법상 잔존가치는 0으로 봄)

※ 간단한 예

ex) 최초가치 100원,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10일 경우

- 정액법 $(100-10)/3 = 30$ 원씩 3년에 걸쳐 상각

- 정률법(비율53.58) : 최초 연도 $100 \times 53.58\% = 53.58$ 원 감액

두 번째 연도 남은 금액 $46.42 \times 53.58\% = 24.87$ 원 감액

※ 정률법은 초기감가상각이 큰 방식이며, 잔존가치가 없으면 사용불가

- 연수합계법 : 최초 연도 $3/(1+2+3) \times (100-10) = 45$ 원

두 번째 연도 $2/(1+2+3) \times (100-10) = 30$ 원

※ 연수합계법도 초기감가상각이 큰 방식



- 감가상각 누계액 : 개별 자산별로 매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이 누적되어 표시
- 대손상각비 : 대금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 매년 말에 비용으로 손실 처리한 금액
 - ※ 영업비용에 포함되는 대손상각비는 영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손에 한정
- 세금과 공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공과금(조합비, 협회비, 적십자비 등)을 말함
- 광고선전비 : 상품·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
- 연구비 : 신제품·신기술의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함. 그러나 미래에 확실한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처리
- 경상개발비 : 신제품·신기술의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미래에 경제적 효익 제공이 거의 불투명한 비용으로 당해연도 분으로 처리한 비용
- 영업수익 : 영업활동(상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으로 벌어들인 수입
- 영업외 수익 : 총수익 중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한 수익외의 다른 수익
- 영업비용 : 영업활동(상품판매 또는 서비스제공)에 지출된 비용
- 영업외 비용 : 총비용 중 직접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부분이나 영업과 상당히 관련 있는 비용
- 은행계정 : 은행 자신의 재산으로 예금과 대출이라는 고유 업무를 운용하는 부문
- 신탁계정 : 신탁업무는 신탁법, 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 신탁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개인 또는 법인(위탁자)으로부터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위탁받아 수익자(위탁자 자신이나 그에 의해 지정된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부문
- 신탁보수 : 「신탁계정」의 잔액항목으로 「은행계정」에는 수익항목에 「신탁계정」에는 비용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11 정보기술 기반 및 활용

- 전자상거래 : 컴퓨터와 네트워크라는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함
- 사이버쇼핑몰 : 컴퓨터 등과 같이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가상의 상점)을 사이버몰이라 지칭(전자거래법 제2조 6호), 사이버몰 중 B to C 거래를 주로 하는 사이버몰을 말함

- ◎ e-마켓플레이스 : 기업간 거래를 위한 가상공간으로서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비스를 거래하고, 기업활동 관련정보를 획득하며, 금융·물류 등의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장터를 말함
- ◎ 인터넷 : 전 세계의 통신망간에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원격접속, 전자 우편, 파일 전송, 월드와이드웹 등이 가능한 것을 말함
- ◎ 홈페이지 : 웹 사이트에 연결할 때 제일 먼저 뜨는 화면을 홈페이지(home page)라고 함
 - ※ 웹사이트 (Web site): 월드와이드웹(WWW: World Wide Web)상의 사이트

12 사업장 건물면적

◎ 건축법에 관련 조항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건물연면적은 용적률과 관계된 개념으로 공간적 개념임



13-3 체인점 가입여부(소매업, 음식점업)

- 레귤러 체인 : 단일자본에 의한 체인 스토어를 말한다. 어떤 기업이 전부 자기자본으로 체인점을 설립하여 점포전개를 한 것이다. 회사형 체인, 또는 직영점 체인이라고 일컫고 있다.
- 볼런터리 체인 : 「임의연쇄점」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것처럼 독립자본의 다수 소매점 또는 도매점이 모여서 자기가 가지는 기능의 일부를 가맹본부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도매업자라 할지라도 조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소매업이며 체인경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등 소매업간에 횡적 연락이 중시된다.
- 프랜차이즈 체인 : 조직의 형태는 볼런터리 체인에 흡사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모두 독립자본의 사업자이지만 운영의 주체는 가맹본부에 있으며 가맹점은 체인경영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는다. 또한 가맹점끼리의 횡적 연락보다도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종적 관계가 중시된다.

	독립성	가맹비	본사와의 관계	본부의 개입정도	본부의 성격
프랜차이즈	약하다	본부의 주요한 수익원	수직적	광고, 구매, 판매활동 등 전반적	가맹점 모집을 통한 수익활동
볼런터리	강하다	실비나 무료	수평적	광고 또는 구매 등 일부활동	가맹점들의 공동 활동을 위한 보조

※우리 지침 상 레귤러 체인(직영점)은 체인 가입 안함으로 봄

13-1 상품매입처별 구성비(도·소매업)

- 본지점간 이동 : 자기업 내 본지사간 이동, 동일 기업 산하 지사간의 이동, 동일 기업 내 다른 장소에 있는 곳으로부터 장부상으로만 상품이 이동하는 경우를 포함함
- 생산업자부터의 이동 : 물건을 최초로 제조한 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말함
- 도매업자로부터의 이동 : 물건을 중간 도매하는 업체로부터의 이동을 일컬음
- 해외 수입 : 외국으로부터 직접 무역통관을 거쳐 수입한 경우를 말함
 ※ 다른 이에게 무역통관을 의뢰하여 수입한 경우는 도매업자로부터의 구입임

13-2 상품판매처별 구성비(도·소매업)

- 본지점간 이동 : 같은 기업 내 본지점간, 지점 상호간의 같은 기업체의 다른 장소에 있는 공장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나 장부상 상품의 이동이 있는 경우 등을 기업

- 도매업자에게 판매 : 해당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상품을 판 경우의 비중을 기입
- 소매업자에게 판매 :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상품을 파는 경우를 말함
 - ☞ 자신이 속한 기업에 소속된 소매업을 영위하는 지점에 장부상 판매나 판매를 한 경우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가 아니라 본지점간 이동에 해당함
- 생산업자에게 판매 : 가공이나 제조, 건축 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 위한 생산업자에게 재료로 파는 경우를 말함
- 기타산업사용인에게 판매 : 위 생산업자에게 재료로 파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 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약간의 가공과 변형을 행하여 제 판매하는 경우나 제조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에게 판매한 경우를 말함
- 일반판매자에게 판매 : 일반소비자로서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를 말함
- 해외수출은 해외에 자신이 직접 수출한 경우를 말함

13-1 교육시설(교육서비스업)

- 학급(학과, 강의실) 수 : 학급은 초중고에 해당하는 학교일 때는 학급수를 기입하며 대학교는 학과수를 학원은 강의실수를 기입
- 재적학생수 : 교육기간에 등록된 학생수를 기입. 여기에는 단과대학원생도 포함되며, 여러 교과목을 한 학원에서 듣는 학생의 경우 한명의 학생으로 간주
- 교원(강사)수 : 학생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기간제 교사는 포함), 강사 (전임강사 이상), 교수 (조교수 이상) 등을 기입하며 휴직자는 포함
 - ※ 조교, 시간강사, 겸임교수, 명예교수, 대우교수, 객원교수는 제외

13-2 병·의원 입원시설(보건업)

- 병실수 : 사방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입원환자가 입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방수
 - ☞ 수술실, 회복실, 물리치료실 등은 병실수에서 제외
 - ☞ 처치실, 의사나 간호사를 위한 공간, 배선실 등은 제외
 - ☞ 1인용 ~ 6인용 등 병상수와는 관계없이 모두 1실로 기입
 - ※ 단, 특수병실, 인큐베이터실, 중환자실은 병실수에 포함시킴



- 병상수 : 병원에 수용 가능한 환자용 침대 수를 기입
 - ☞ 일반병실(병상), 중환자병실(병상), 특수병실(병상), 인큐베이터는 위 모두에 해당함. 단, 응급실은 병상수에만 포함시킴
- 입원 환자수 : 2005. 12. 31. 현재 기준으로 입원 중에 있는 환자 수를 기입
 - ☞ 수술실, 회복실, 물리치료실 등에서 치료 중인 환자는 입원환자 수에서 제외 위 병실개념에 들어가는 곳에 12월 31일 현재 등록입원 환자 수를 기입

13-2 경기·오락시설(오락·문화, 운동관련산업)

- 골프장(홀) : 보통 골프장 잔디에 갖추어진 홀수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홀은 단순한 홀이 아니고 일정한 거리에서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홀
- 스키장(슬로프) : 슬로프는 스키장의 면수를 말하는데 폭 30m 이상이면서, 300m 이상 거리의 슬로프의 수만 셉니다. 그 보다 작은 슬로프는 슬로프의 수에서 제외
- 수영장(레인) : 구분되어져서 수영이 가능한 25m 이상의 레인수를 말함
- 볼링장(레인) : 현재 사업을 위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볼링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레인수를 기입
- 당구장(대) : 4구, 포켓볼을 가리지 않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영업용 당구대 수를 기입
- 전자게임장(대) : 전자게임만을 위한 전자게임기 대수를 기입
- 컴퓨터게임장(대) : 흔히 PC방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PC방으로 컴퓨터게임이 가능한 컴퓨터 게임기의 대수를 기입
- 노래방(대) : 노래방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의 노래방기기(가라오케) 대수를 기입
- 기원(면) : 기원에 설치된 바둑판을 기준으로 대국할 수 있는 면수(1면 약 1.5m²)

13-3 사회복지 수용시설(사회복지사업)

- 방 수 : 침대방 또는 온돌방 등을 불문하고 사방 벽으로 둘러 싸여 장애인, 노인, 아동, 부녀자 등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방수를 기입
 - ☞ 수용관리자를 위한 시설이나 부엌, 화장실 등 기타 시설은 제외
- 수용 가능인원 : 2005. 12. 31. 현재 장애인, 노인, 아동, 부녀자 등 수용자를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수

- ◎ 현재 수용인원 : 2005. 12. 31. 현재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아동, 부녀자 등 수용자 인원수
- ※ 사회복지수용시설 입소자 예 : 보호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여성, 부랑인 등

16 유형자산

- ◎ 유형자산 : 사업체가 영업활동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비품 등을 말함. 즉, 회사가 영업활동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

※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차이

- 유형자산은 기업의 생산능력이나 영업능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하여 취득한 점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제조)한 재고자산과 다르다.

※ 유형자산과 투자자산의 차이

-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따라서 기업의 영업활동에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유희상태에 있는 유형자산은 투자자산으로 대체된다. 이에는 비영업용부동산 등이 있다.

- ◎ 토 지 :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대지, 임야, 잡종지 등
 - 예 영업용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
 - ※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조사 대상이 아님(이는 투자자산임)
- ◎ 건 물 : 영업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건물의 부속설비 등
- ◎ 기계장치 : 기계장치와 운송설비 및 기타의 부속설비 등
- ◎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
- ◎ 건설중인 자산 : 업무용 유형자산(건설, 구축물, 설비, 기계 등)의 건설 및 구입을 위해 지출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완공에 이르기까지 일시 처리하는 계정



17 무형자산

- 무형자산 : 사업체가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을 말함.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차지권, 창업비, 개발비 등을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부분의 무형자산은 독점적·배타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권리나 효익을 향유할 수 있는 법률적·경제적 권리를 말함.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
 - ※ KS획득 비용, Q마크 획득 비용은 무형자산이 아니며 개발비도 아니므로 발생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
- 저작권 :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배타적·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개발비 : 특정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
- 영업권 :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
 - ※ 영업권은 성질상 기업과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창설한 것은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고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계상이 가능함.
- 창업비 :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회사 설립을 위한 설립비용, 발기인의 보수, 설립등기비 등

18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기술연구개발비 : 기술연구개발비는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나 연구비처럼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 개발비라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신제품 또는 신기술과의 관련, 개발활동과 관련, 개별적으로 식별가능,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하게 기대되는 경우의 대차대조표상의 무형자산인 개발비, 연구소 건립 등의 경우에 당해연도의 유형자산의 증가분 등을 모두 포함 일명 R&D라 불리는 비용
- 기술도입비 : 산업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기술도입에 따른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 상의 비용, 산업재산권 권리 자체의 구입으로 대차대조표상의 무형자산 증가분 등이 모두 포함됨

다. 재무제표

- 재무제표 : 기업의 거래를 측정, 기록, 분류, 요약하여 작성하는 회계 보고서. 여기서 기업의 경제적 상황, 즉 재무상태, 경영성과, 재무상태 변동 등을 알 수 있음. 재무제표의 종류로는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기와 주석으로 구성(기업회계기준 § 5)
- 대차대조표(B/S) : 사업체가 일정시점에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을 요약하여 보여 주는 표
→ 일정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표<소위 stock의 저장개념>
- 손익계산서(P/L) : 일정기간(회계기간, 보통은 1년간) 사업체가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수익·비용·이익(또는 손실)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사업체의 경영성적표
<소위 flow의 유량 개념>
- 현금흐름표 : 사업체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써 일정기간 동안 현금의 변동내역을 나타내는 보고서
- 간편장부(簡便帳簿) : 국세청이 회계장부를 근거로 과세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가 수입·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가계부 수준의 장부
- 결산(closing) : 한 회계기간 동안의 자산, 부채, 자본에 발생한 변동내용 및 그 변동들로 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
- 계정(account) : 거래의 성격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 놓은 고유명칭
예) 수익계정, 비용계정, 자산계정, 자본계정 등
- 수익(revenue) :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하여 벌어들인 돈이나 증가한 재산
- 이자수익 : 은행에 예금하거나 돈을 빌려준 경우 발생하는 이자



비과세적용 대상자 및 간이과세적용 배제업종

구분	내 용
대상자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한다. 다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
	④ 부동산매매업
	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⑥ 부동산임대업
	⑦ 변호사업, 해사보좌인업, 공증인업, 집달관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⑧ 사업장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조업인 경우에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것은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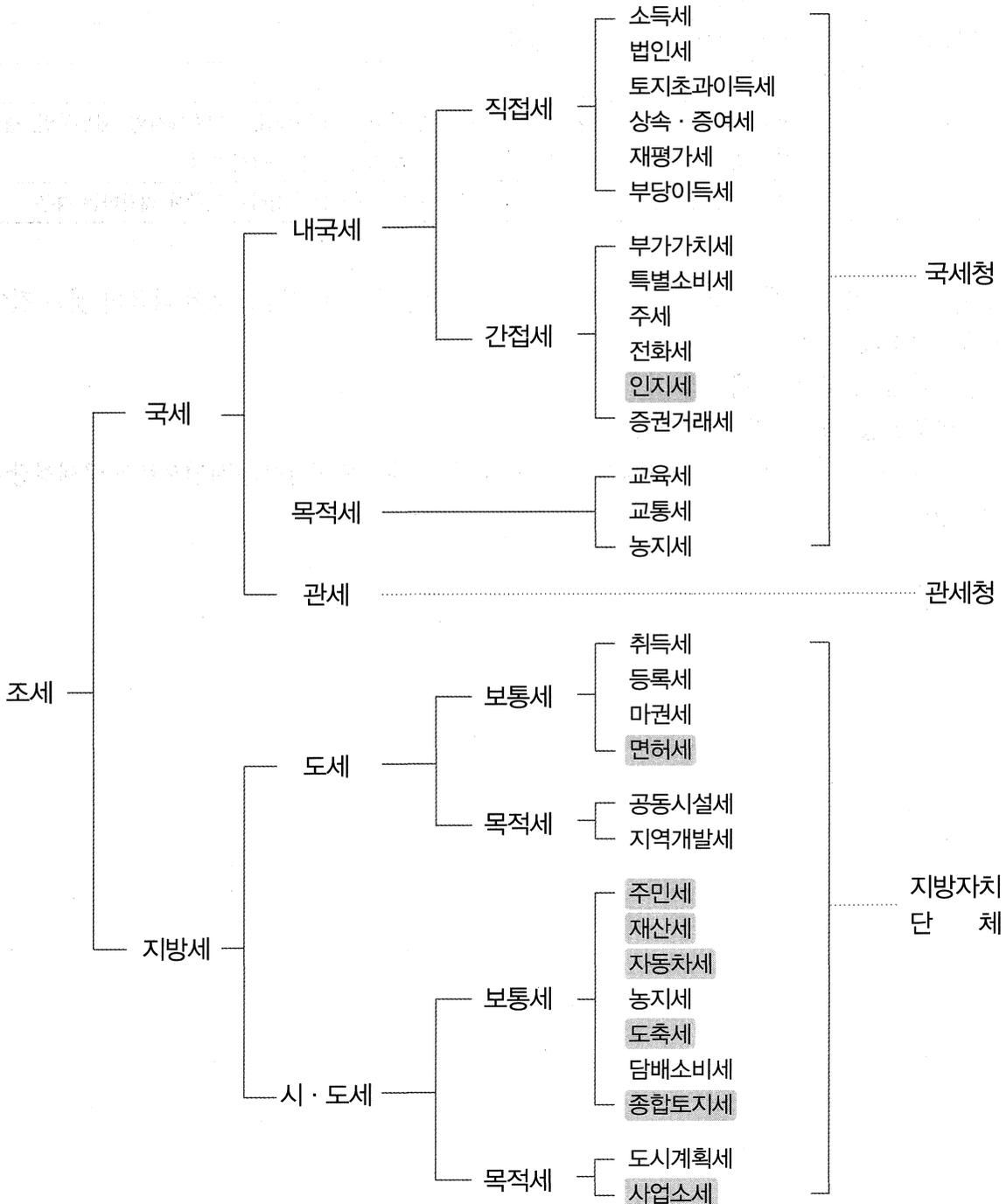
- ①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 ②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 ③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2. 세금과 공과

가. 세금

- 조사에서 제외되는 세금은 ① 국세 중 직접세, ② 이익에 부과되는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③ 자산의 구입 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④ 매출액조사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취급하는 부가가치세임. 즉, 아래「조세체계」에서 음영 처리된 세금이 세금과 공과.

※ 조사체계





※ 국세 요약

종합소득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중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과하는 국세
법인세	법인사업자가 법인의 소득이 발생 할 때 납부하는 국세로서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 법인명의로 납부하는 국세
상속세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 납부하는 국세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사항을 증여 받았을 때 납부하는 국세
재평가세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국세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 수입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국세
특별소비세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
주세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가 납부하는 국세
전화세	전화가입자가 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국세
인지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 하는 자가 문서작성 시 인지첨부에 의한 국세
증권거래세	주권(지분포함)양도와 관련하여 거래소에서 거래 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

* 상기내용은 세목별로 개괄적인 내용만 요약하였는바 구체적인 과세사항이 아님

나. 공 과 금

국세기본법에서는 공과금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 이외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손금 산입되는 법정공과금(법령 25①)

- ① 상공회의소비
- ② 조합비(회비 포함)또는 협회(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및 협회만 해당)
- ③ 대한적십자 회비
- ④ 수입허가 신청 시 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입부담금
- ⑤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자가 소맥분 가격안정기금으로 한국제분공업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 ⑥ 금융기관(단기금융회사가 및 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함)의 신용보증기금출연금
- ⑦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기금출연금

- ⑧ 신용관리기금출연금
- ⑨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 출연한 직업훈련분담금
- ⑩ 관광개발진흥기금납부금
- ⑪ 축산진흥기금적립금
- ⑫ 잠업진흥기금적립금
- ⑬ 석유사업기금의 납부금
- ⑭ 석탄가공업자의 석탄산업안정기금의 납부금
- ⑮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기금으로 납부하는 분담금
- ⑯ 농약관리기금납부금
- ⑰ 해외건설진흥기금납부금
- ⑱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기금출연금
- ⑲ 가스안전관리기금의 납부금
- ⑳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출자임원에 대한 부담금도 손금산입함)
- ㉑ 기술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금
- ㉒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 ㉓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액
- ㉔ 대한석탄공사가 연탄제조업자에게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 ㉕ 방사선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 ㉖ 진폐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 ㉗ 발전소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 ㉘ 교통유발분담금(1992.12.21. 신설)
- ㉙ 장애인고용부담금(1992.12.21. 신설)
- ㉚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금(1992.12.21. 신설)
- ㉛ 폐기물처리부담금
- ㉜ 교통안전기금에 납부하는 분담금
- ㉝ 보험보증기금출연금
- ㉞ 수도사업자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금액
- ㉟ 담배사업법에 의한 공익사업부담금
- ㊱ 특정다목적댐 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 ㊲ 열안정기금으로 납부하는 수입부담금(96.12.31 신설)
- ㊳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대손보전준비금과 출연금(96.12.31 신설)
- ㊴ 예금보험기금으로 납부하는 보험료(96.12.31 신설)
- ㊵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에 수입금 납부액(96.12.31 신설)
- ㊶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감독원 납부하는 분담금(96.12.31 신설)



2) 지정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 ①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의 특별회
- ② 임의조합 또는 협회의 회비

3) 손금 불산입하는 경우

- 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법인 22601-1102, 1992. 5.20)
- ②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③ 증권회사의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 ④ 도로점용료, 도로점용료 상당액 부당이득금(법인 22601-1014, 1992. 5. 6)
- ⑤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법인 22601-1929, 1929. 9.16)



2006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

지도지침서

발행일 _ 2006년 2월 일

발행처 _ 경제통계국 서비스업통계과

전화 _ (042)481-2183

팩스 _ (042)481-2468

인쇄 _ 신진기획

전화 _ 042)638-7887